

碩 士 學 位 論 文

障 碍 人 便 宜 施 設 擴 充 方 案 에 关 한 研 究

- 濟 州 道 內 市 · 郡 을 中 心 으 로 -

指 導 教 授 : 高 昌 堦



濟 州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行 政 學 科 一 般 行 政 專 攻

吳 性 眞

2001 年 1 月

障 碍 人 便 宜 施 設 擴 充 方 案 에 관 한 研 究
- 濟 州 道 내 시 · 군 을 중 심 으 로 -

指 導 教 授 : 高 昌 燾

이 論 文 을 行 政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

2001년 1월 일

濟 州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吳 性 眞 의 行 政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을 認 准 함 .

2001년 1월 일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목 차

<제목차례>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3
제 2 장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론적 토대	4
제1절 장애인 복지의 이념	4
1. 장애의 정의와 분류	4
2. 장애인복지의 이념	15
제2절 장애인 편의시설의 의미	17
1. 장애인과 물리적 환경개선의 의미	17
2. 장애인 편의시설과 접근권의 관계	18
제3절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제도	21
1. 우리나라의 편의시설 관계법	21
2. 외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	25
제4절 연구 분석틀	32
1. 분석틀의 구성	32
2. 분석 요소	33
3. 조사설계 및 내용	34
제 3 장 제주도 장애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분석	37

제1절 제주도 장애인 현황	37
제2절 제주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45
1. 도로 · 보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47
2.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50
제 4 장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 및 문제점 분석	55
제1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분석	55
1. 장애인 사회활동도 분석	55
2.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요구 정도 분석	59
3.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만족도 분석	64
제2절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	68
1. 장애인의 사회활동도	68
2.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욕구	69
3.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71
제 5 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편의증진방안	73
제1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제고요인 설정	74
1. 장애인 편의시설의 緊要度	75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도	76
3. 장애인 편의시설의 연계성	77
제2절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편의증진방안	78
1. 장애인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의 강화	78
2. 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 수립	78
3. 장애인의 이동 연계도를 감안한 편의시설 설치	81
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강화	81
5. 교육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강화	82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연구	83
7. 장애인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사회인식개선	83

제 6 장 결 론	84
1. 요약	84
2. 정책적 함의와 과제	86
참고문헌	89
Abstract	92
부록 1 관찰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95
부록 2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조사 설문지	98
부록 3 기관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107

<표차례>

<표2.1> 장애인의 사회환경 영역	6
<표2.2> 국제장애분류(ICIDH-2)	9
<표2.3> 우리 나라의 장애관련 법률	10
<표2.4> 서구국가의 장애인 정의	13
<표2.5>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19
<표2.6> 국내외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항목 비교	29
<표2.7> 국내외 기준의 기본항목 비교	30
<표2.8> 설문조사 내용구성	36
<표3.1> 제주도 등록장애인 현황 (2000. 6. 30현재)	38
<표3.2> 지역별 등록장애인 현황	39
<표3.3> 제주도 장애인 복지예산현황	40
<표3.4> 표본조사대상자의 유형분석	41
<표3.5> 장애유형별·연령분포별 조사대상자수	42
<표3.6> 장애유형별 직업종사별 조사대상자수	42
<표3.7> 장애유형별 소득별 조사대상자수	43
<표3.8> 실업장애인들의 취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인식분포	44
<표3.9>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주거형태	44
<표3.10>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주택소요여부 교차표	45
<표3.1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46
<표3.12> 도로, 보도 편의시설 설치현황	48
<표3.13> 횡단보도 편의시설 설치현황	49
<표3.14> 건축물에 대한 지역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50
<표3.15> 공공건물 및 공중편의시설 설치 현황	54
<표4.1> 조사대상 장애인의 외출빈도	56
<표4.2> 조사대상 장애인의 외출목적	56
<표4.3> 조사대상 장애인의 외출시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 1순위	57
<표4.4> 조사대상 장애인의 외출시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 우선순위	58
<표4.5> 장애유형·외출시 교통수단 교차표	59

<표4.6> 도로·보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도	60
<표4.7>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개선 필요정도	61
<표4.8> 조사대상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우선 순위	62
<표4.9>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도	62
<표4.10>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요구정도	63
<표4.11> 장애유형별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	64
<표4.12> 우리 나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만족도 분석	65
<표4.13> 거주지역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만족도	65
<표4.14> 지역별 조사대상자 편의시설 만족도	66
<표4.15> 장애유형별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	67
<표4.16> 편의시설이 가장 잘 설치된 건축물	67
<표4.17> 편의시설이 설치가 가장 필요한 건축물	67
<표4.18> 주요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성 분석	70
<표5.1> 장애유형·편의시설 기금 활용방안 교차표	79
<표5.2> 장애유형·대중교통 편의증진방안 일순위 교차표	80
<표5.3> 장애유형·편의시설 확충방안 교차표	81

<그림차례>

<그림2.1> 장애체계	7
<그림2.2> 장애인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16
<그림2.3> 연구 분석의 틀 도해	32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일반적으로 ‘장애’란 특성이라기 보다는 현재의 상태이며, 현재 활동시 실질적인 제한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상태는 장애인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의식상태 및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장애의 구성요소를 능력(Capabilities), 환경(Environment), 기능(Functioning)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신체적, 정신적 손상 자체보다는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얼마나 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중요한 관심을 가지며, 따라서 장애인이 어떠한 수준에 있든지 환경과 잘 어울리면 그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¹⁾

따라서 장애인 정책(Disability Policy)의 궁극적인 목표를 장애인이 사회 활동으로 전적인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내는데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²⁾

그러나 현실의 장애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편견과 아울러 사회·물리적 환경에서 오는 제약 등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물리적 장애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리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활동의 제한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장애인들은 사회적 고립과 격리를 경험하게 된다.

일반적인 사회적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저학력과 낮은 생활수준, 그리고 고실업 등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아울러 사회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인식 하에 1990년도 미국에서는 미국장애인법(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접근권 보장과 기회균등보장을 기본 정신으로 삼았으며,³⁾ 우리 나라에서도 1997년 4월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하겠다)”을 제정하여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물론 편의증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장애인의 사회접근권 보장을 위한

1) 조성모외, “장애인 복지활동과 시설계획”, 학문사, 1997.1.25, P161

2) 서광윤, “효율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방안”, (한국아태장애인10년연구모임, 1997.3) P5

3) 권도용, “현대장애인복지개론”, 흥익재, 1998.7.10, P21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그 외 건축법, 주차장법 등 개별법에 부분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며 많은 개선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접근권 확보가 이루어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회참여를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약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생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많은 영역에서 제약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접근권의 확보는 장애인 자신이 스스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즉 일반사회 속에서 누구의 도움없이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이를 통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있어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접근권을 바탕으로 제주도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을 가로막고 있는 물리 환경적 요인과 장애인 자신이 느끼는 사회 단절 정도를 찾아내고,

둘째,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시행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내어 장애인의 욕구(Need)에 기초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셋째, 장애인의 접근권을 확보하여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을 강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장애인에 한 규정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

에 있어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UN의 장애인 권리선언(UN총회 제30차 결의 1975. 12. 9) 제1조에서는 “장애인이란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0년 WHO에서는 장애를 세 가지 차원 즉, 심신의 손상(Impairment), 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로 정의⁴⁾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개념정의를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중 이동성에 제약이 심한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으로 제주도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간적 연구범위로는 제주도내 시·군으로 한정하였으며 제주도에 없는 편의시설물에 대하여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시간적 범위로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 분석을 위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7월 31일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13일~1999년 9월 16일 일정한 문항에 대한 관찰조사체크리스를 활용하여 관찰조사를 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에게 갖는 중요성을 도출함은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기본 제원칙을 도출하게 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도와 연계성, 그리고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론적 연구를 위하여 동 연구와 관련된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선행 연구물들인 논문, 장애인 복지관련 전문 도서, 관련 행정부서

4) WH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 Handicaps, (Geneva : WHO, 1980)

: WHO의 세가지 차원의 장애의 개념을 소개하면 WHO는 장애발생의 과정을 질병(Disease)→손상(Impairment)→장애(Disability)→사회적 불리(Handicap)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손상은 장애와 사회적 불리에 영향을 주고, 장애인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활동에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리는 사회적 차원,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장애인이 경험하는 불이익, 편견, 차별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 업무자료, 법령집 등을 분석·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의 개념 및 이념 그리고 특성을 살피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에게 갖는 중요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관찰조사와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관찰조사는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도를 파악하여 얼마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있는가를 분석함과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하여 동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도와 접근성, 연계성 등의 분석을 통한 이용 만족도를 분석하게 된다. 조사결과분석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백분율과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제 2 장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론적



제1절 장애인 복지의 이념

1. 장애의 정의와 분류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다 사용자 편의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장애에 대한 개념과 기본적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혹은 그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해석은 개인과 사회환경과의 관계를 간과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은 사회환경의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장애의 개념 또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⁵⁾

5) 손준규, 사회복지학 개론, 대학출판사, 1992. P.176

따라서 현대에서는 장애 개념을 사회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여 개인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⁶⁾

1) 개인적 장애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어려운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영향을 받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다시 신체장애와 의식장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체장애(impairment)는 생리학적인 신체구조장애와 신체기능장애로 분류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요소가 상호 결합과 동시에 상호 작용 하게 된다. 여기에서 신체장애란 생리학적인 신체구성 요소(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손실로서 신체의 형태(신체구조)와 신체기능에 발생하는 장애이다.

의식장애(despair)는 1차장애인 신체장애가 원인이 되어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지능적 인식(recognition : 감각, 지각, 인지 등의 연계적 통합), 본능적 욕구(desire : 동인적 반응) 및 이성적 선택(selection : 사고, 의지, 판단 등)등에 이상 상태가 발생하여 주체적 태도를 산출해 낼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신체장애와 의식장애는 장애인 개인이 가지는 장애인데 두 개의 개인적 장애가 통합되어서 주체적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능력장애(disability)라고 한다.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체의 단순동작기능이 완전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의식장애가 발생하고 이것이 신체장애와 통합될 때에는 목적 지향적 주체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능력장애라고 한다. 즉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식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능력장애는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어 1차 장애(신체장애)에서 끝나지만 의식장애가 있으면 신체장애의 경중에 관계없이 주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체장애는 곧 능력장애가 아니며 의식장애는 가변적 장애로 완전변화가 가능함으로 능

6) 권도용외, 전계서, 1998.7.10 P32~44

력장애를 변화시키는 기준은 신체장애가 아니라 의식장애가 되는 것이다.(권도용, 1998)

2) 사회적 장애

모든 인간은 사회라는 틀 속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하며 사회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장애인의 사회생활은 사회환경과의 상호관계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환경은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능력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형성된 사회환경은 장애인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표2.1> 장애인의 사회환경 영역

구분	권도용의 분류		성정현의 분류	
환경 영역	물리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 및 생활공간 : 주택, 건물, 도로 등 ·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한 물리적 수단 : 시설, 도로 설비, 이동수단, 기계 및 제용구 등 	물리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환경 · 정보
	문화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징문화 : 사회의 행동양식, 전통, 믿음 · 규범적 문화 : 법률, 윤리, 도덕, 민습 등 	문화적 환경	· 사회인식적 측면
	사회심리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구성원의 편견, 선입관 	사회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계망: 타인과의 관계 (지지와 수용 등) · 사회체계 : 경제, 의료직업

자료 : 1) 권도용, “장애인 재활복지의 이념과 목적” (아·태 장애인 10년(1993~2002)에 대처할 국가적 장기전략 및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자료집),

한국 아·태 장애인 10년 연구모임, 1995. 3

2) 성정현, “지체장애인과 환경간의 적응적 적합성(adaptive fit)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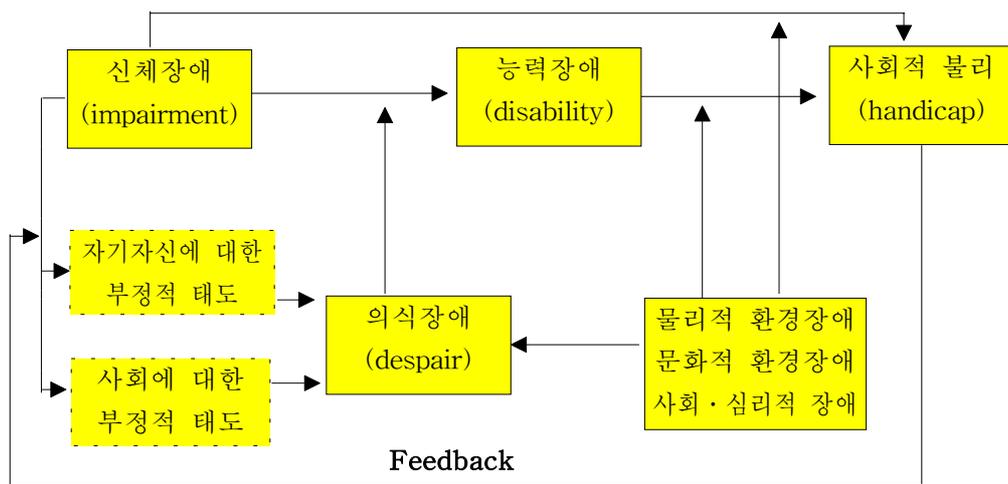
이러한 사회적 환경요인에 대하여 권도용과 성정현은 <표2.1>와 같이 환경영역에 대하여 물리적 환경, 문화적 환경, 사회·심리적(사회적) 환경으로 분류하여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사회·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개념은 의학적인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서 바라보았을 경우에는 사회에서는 오는 여러 가지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불리를 간과하게 되어 올바른 장애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올바른 장애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손상에 대해서는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재활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장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1979년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세계 장애인의 해를 앞둔 선언에서 “장애는 개인과 그 환경간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장애의 정의에는 기능상의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리(Handicap)도 포함되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1981년 국제 연합 총회는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결의하면서, 세계 장애인의 해는 개인적 특질인 손상(impairment),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장애(disability), 그리고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불리(handicap)간에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림2.1> 장애체계



이러한 입장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라는 장애에 관한 개념의 틀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장애의 세 차원이라 할 수 있는 기능장애와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가 인과적 또는 시간적 연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어떠한 질병에 의하여 기능장애가 발생하고 이러한 기능장애가 활동능력에 제약을 가져오는 경우에 능력장애가 생기며, 이러한 능력장애가 어떠한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때 사회적 불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체구조의 손실이 있는 기능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활동능력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며 활동능력에 제약이 있는 능력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로 인하여 사회적 불이익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이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질병과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 간에 명확한 경계를 구분하기가 곤란하며, 질병이나 부상, 기능장애 외에도 능력장애와 사회적 불리에 영향을 주는 다른 많은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⁷⁾

예를 들면, 손상은 없어도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이라든가, (현재는 없는) 예전의 손상이 사회적 불리를 초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88년 3월 26일부터 3일동안 일본 재활협회가 주최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장애 분류 개편을 위한 보고회의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장애개념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Disablement라는 새로운 장애개념을 채택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세계보건기구가 ICIDH에 의해 채택한 장애개념은 기능장애(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의 범주로 구분한 것이 었으나 1997년에 제안된 ICIDH-2에서는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의 의미가 내포된 새로운 차원의 장애개념을 제안하였다.

이에 의하면 우선 현행 국제장애분류의 세 범주를 손상, 활동, 참여로 구성하고 장애개념은 이 세 범주를 포괄하는 Disablement라는 새로운 용어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7)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1998.7.20, P14

<표2.2> 국제장애분류(ICIDH-2)

분류	손상유형 (Impairment)	활동 (Activities)	참여 (Participation)	상황요인 (contextual factors)
기능의 수준 (Level of functioning)	신체(신체의 부분)	개인 (전체로서의 개인)	사회 (사회와의 관계)	환경적 요인 (기능상의 외부적 영향) 개인적 요인 (기능상의 내부적 영향)
특징 (Characteristics)	신체 기능 신체 구조	개인의 일상활동	상황에서의 관련	신체적, 사회적, 태도적 세계의 형태
긍정적 측면 (Positive aspect)	기능적, 구조적 통합	활동	참여	촉진자
부정적 측면 (Negative aspect)	손상	활동제한	참여제한	장벽, 어려움

자료 : WHO(1997)

ICIDH-2에서 제시된 정의에 의하면, 손상(impairment)은 신체 구조나 물리적, 심리적 기능상의 상실이나 비정상성을 의미한다. 손상의 차원은 신체 기능 혹은 신체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기능상의 제한, 신체 혹은 신체의 부분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따른 불능을 손상이라고 한다.

활동(Activity)/활동제한(Activity Limitation)은 개인적 수준에서 기능의 범위와 본질로서 활동의 차원은 일상생활과 관계된 개인의 활동을 다룬다. 일상의 과업에서 기대되는 개인의 통합된 활동으로서 단순하게는 걷기에서부터 쇼핑, 직무완수 등의 복합적인 활동에 이르기까지 활동의 차원은 행위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⁸⁾

마지막으로 참여(Participation)/참여억제(Participation restriction)는 손상, 활동, 건강조건, 상황요인과 관련한 생활상황에서 개인의 연관성 정도와 본질로 정의한다. 따라서 참여의 차원은 사회적 현상을 다루며 개인의 참여 정도, 참여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사회적 반응을 의미한다. 다양한 영역에

8) LaPlante, M. P., "The demographics of disability" The milbank Quarterly, vol.69, Suppl/2, Pt. 1,1991.에서는 행위(action)은 인간행동(human performance)의 기본 단위이며 장애는 순수하게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현상인 손상과 구별되는 행위(action) 이상의 것과 관련된다고 한다. 순수하게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행위인 신체적, 정신적 행위는 말하기, 생각하기, 걷기, 보기 등의 물리적·사회적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의 방법과 관련된 영역이다. 활동은 즉 다양한 특정활동은 특정한 세트 행위의 조합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건강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물리적·사회적·태도적 세계의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는 것이다. 다른 환경은 한 장애인에게 다른 영향을 준다. 이에 참여는 환경과 장애를 가진 사람간의 복잡한 관계와 상호작용이다. 참여는 따라서 생태학적이고 환경적인 모델에 의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세 분류는 개인적인 유지와 보호의 참여, 이동성의 참여, 정보교환의 참여, 사회적 관계의 참여, 교육·노동·레저와 정신적 영역의 참여, 경제 생활의 참여, 도시와 지역사회 생활의 참여이다. ICIDH-2에서 제시한 손상, 활동, 참여의 3대 축의 적용은 사실상 모든 개인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과거의 장애인의 경계는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개념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입장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추세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 나라 현행법 중 장애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근로기준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배상법 등 13가지에 이른다. 각 법에 따라 장애에 대한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며, 장애의 범주도 달리 규정을 하고 있다. 각 법의 제정연도, 규정하고 있는 장애등급, 장애종류에 대하여는 <표 2.3>과 같다.

<표2.3> 우리 나라의 장애관련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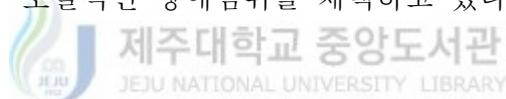
법명	제정연도	장애등급	장애종류
장애인복지법	1981	1~6등급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者를 말한다.(제2조) 장애종류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장애, 뇌변변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	1990	1~6등급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997	없음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제2조)
특수교육진흥법	1977	없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정한다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사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제1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4	휴유장애 1~14급	시각장애, 저작기능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흉부부장기장애, 지체장애, 생식기장애, 외모추상, 비장장애, 신장장애, 치과보철, 청각장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신체장애 1~14급 폐절등급 1~3급	신체장애 : 시각장애, 언어장애, 저작기능장애, 신경장애, 정신장애, 흉복부장기기능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외모추상, 생식기장애, 신장 또는 비장장애, 치과보철 폐절:시각장애, 언어장애, 저작기능장애, 정신장애, 신경장애, 흉복부장기기능장애, 지체장애, 기타폐절
근로기준법	1953	신체장애 1~14급	신체장애:시각장애, 언어장애, 저작기능장애, 흉복부장기기능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신경기능장애, 외모추상, 생식기장애, 신장장애, 비장장애, 치과보철, 기형
국가배상법	1967	신체장애 1~14급	신체장애:시각장애, 언어기능장애, 저작기능장애, 정신장애, 흉복부장기장애, 지체장애, 외부추상, 생식기능장애, 신경기능장애, 치과보철
국민연금법	1986	1~4급	시각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신경장애, 정신장애, 저작기능장애, 척추변형, 노동불능상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1984	상이등급 1~6급	전상(공상)군경, 4·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상이종류:신경장애, 정신장애, 흉복부장기기능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저작기능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취각 또는 호흡장애, 신장장애, 방광기능장애, 비장장애, 외모추상·변형, 생식기능장애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973	폐절등급 1~14급	폐절 : 언어장애, 시각장애, 저작기능장애, 흉복부장기기능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신경장애, 생식기장애, 외모추상, 치과보철, 코기능장애, 신장장애, 척추기형
공무원연금법	1959	폐절등급 1~14급	시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신경장애, 저작기능장애, 코기능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생식기장애, 신장장애, 비장장애, 외모추상, 치과보철, 흉복부장기기능장애
군인연금법	1963	폐절등급 1~3	폐절 :지체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저작기능장애, 청각장애, 정신병, 빈혈·영양부족 등으로 인해 무력상태, 생식기장애, 급성질환, 신경증, 심장병, 후두적출, 완전마비, 전신쇠약, 신장 또는 방광결핵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장애인 관련법률 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종류 및 장애범위가 나머지 법령보다 협소하게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개념을 살펴보면 의학적인 수준과 개인적 차원에서 장애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종류 및 범위가 협소함은 물론 장애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문제를 등한시하여 진정한 장애인 복지를 이루는데 있어 문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범위가 개발도상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인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 장애인의 범위를 주로 의학적 모델(medical model)에 입각하여 주로 신체구조 및 정신상의 장애로 판정하는 것에 비하여 유럽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신체, 정신의 기능적인 장애에 추가하여 특정한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 과업수행(노동)능력, 개인적 요인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조건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의미의 장애 등 포괄적인 장애범위를 채택하고 있다.



가. 미국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 관련 법률은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⁹⁾”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 외 사회보장법, 재활법, 발달장애인법, 미국장애인교육법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미국의 장애인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 1990)”의 제3조 2항에서의 장애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ADA는 장애인고용시 차별 금지 규정, 교통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규정,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 통신 관련 규정 등 사회·물리적 환경에 관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로서 장애인의 권리장전이라고도 불린다.⁹⁾ 이 법에서 장애개념은 장애문제를 인권과 차별에 대한 문제로 파악하여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ADA에서 장애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있어 한가지 이상 실질적으로 제약을 가진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학습,

9) 박옥희, 전계서, 1998. 7.25, P25

자신을 보호하고 일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은 장애의 기록을 가졌지만 이젠 더 이상 손상(장애)으로 고통받지 않는 사람, 셋째, 비록 실제로 장애를 갖지 않았지만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또한 ‘장애’로 규정하고 이 법에서 보호하고 있다.

즉, ADA법에서의 ‘장애인’은 첫째, 일상생활 활동 중 한가지 이상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를 가진 자, 둘째, 지금은 완쾌되었으나 전에 기능장애의 기록이 있는 자, 셋째, 기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간주된다라는 의미는 주요 일상활동을 현저히 제한하지는 않으나 고용인에 의해 그러한 제약을 가졌다고 취급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장애를 가진 것, 오직 기능장애에 대한 고용인의 태도의 결과로서 주요 활동을 제한하는 기능장애를 가진 것, 어떠한 기능장애도 갖지 않았으나 고용인에 의하여 그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취급되는 것 등을 말한다.¹⁰⁾

나. 기타 서구국가

미국을 제외한 기타 서구 선진국에서의 장애인의 정의와 범위를 살펴보면 <표2.4>과 같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도 법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장애인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고 있으며 유럽 선진국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4> 서구국가의 장애인 정의

국명	관계법	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영국	장애차별법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1995)	장애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말한다.
	국가부조법 (National Assistance Act:1948)	맹자, 농자, 아자 또는 어떠한 특성이든 지니고 있는 정신적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와 질병, 부상, 또는 선천적 기형에 의해 현저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장애를 지니게 된 모든 자를 말한다.

10) 남상만의, “장애인 복지개론”, 홍익재, 1997. 8.30, P45

영국	장애인(고용)법 (Disabled Persons(Employment) Act : 1944,1958)	부상, 질병 또는 선천적 기형 등으로 자신의 연령, 경험, 자격에 상응하는 직업을 취득하고 유지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지닌 자를 말한다.
호주	장애차별법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1992)	장애의 정의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신체적·지적·심리적·정신적·감각적·신경적 장애와 추형·기형 및 질병을 야기하는 유기체의 존재(예: HIV 바이러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가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진 것으로 인지되는 장애도 포함
	연방장애서비스법 (Commonwealth Disability Service Act : 1986)	지능, 저신, 감각, 신체적 손상 등으로 의사소통, 학습, 이동 등에 지장이 있는 자
스웨덴	일반적 정의	신체적 결손, 정신적 결손, 또는 사회적 장애(알콜중독, 약물중독, 언어장애를 보유한 외국 이민자)로 인하여 취업하거나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타인보다 곤란한 자(고용곤란자의 의미로 사용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뿐 아니라 각종 사회적 장애 포함)
노르웨이	국민보험법	장애는 질병, 부상 또는 선천적 변형으로 인한 장기간 지속되며 심각한 기능능력의 감소상태임.

일본은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각각 「신체장애자복지법」과 「정신박약자복지법」의 별개의 법에 의하여 규정하다가 1993년 제정된 「장애인기본법」에서 통합하여 정의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장애자라 함은 “신체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각각의 구체적인 정의는 관련된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¹¹⁾

특히 장애인복지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의 하나인 독일의 장애인 정의와 범위, 세부기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독일은 장애정도를 10~100까지 10단위로 나누어 최소한 20%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중복장애가 있을 때는 장애정도의 단순 합산이 아니라 종합적인 기능 손실을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확정한다. 특히 독일의 장애인복지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역점을 두고 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GdB)가

11) 김용득, 유동철,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인간과복지, 1999.9.10, P98

50% 이상인 자로서 독일 내에 거주 또는 주로 거주하거나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단 일정 조건하에서 장애정도가 30~50% 사이인 자도 중증장애인에 준 하는 자로 간주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의 이념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종이다. 사회복지란 인간이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발달의 기회를 부여하려 한다. 사회복지란 신체적 측면에서의 복지, 물리적 측면에서의 복지, 정신적 측면에서의 복지 등을 모두 포함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것이다.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며 모든 인간은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란 사회제도와 정책, 사회계획 등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²⁾

사회복지는 장애인복지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¹³⁾,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가치, 목적은 사회 복지의 그것과 상통한다.

따라서 1976년의 제31차 유엔총회에서는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장애인의 해의 주제를 '완전참여'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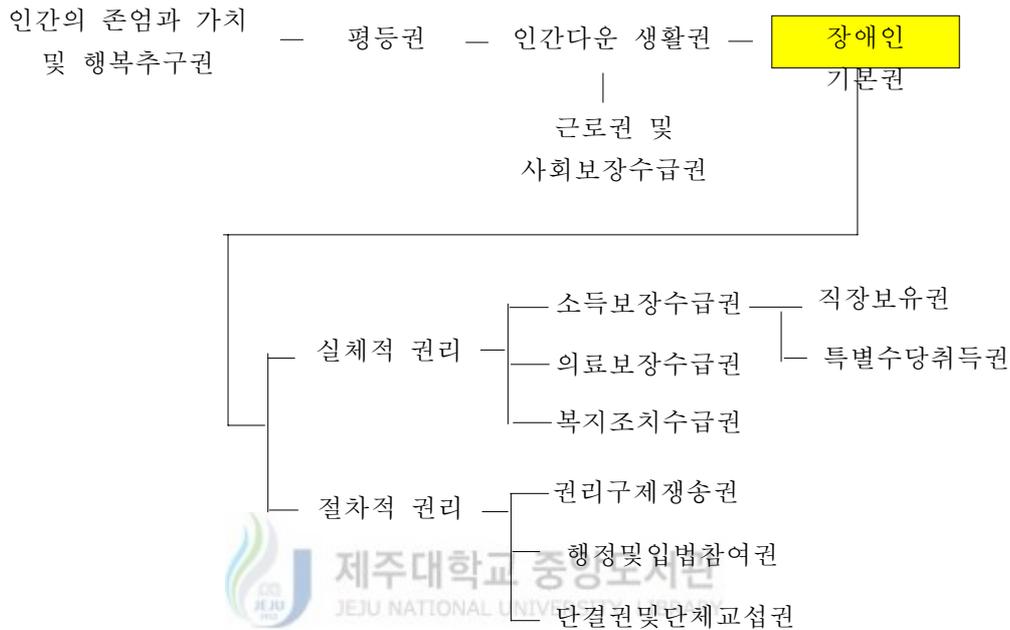
또한 1979년의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세계장애인의 해는 장애인이 사회경제 개발로 인한 생활조건의 개선에 있어서 균등한 분배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과 동등한 생활조건의 향유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개발 및 사회생활에의 완전한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또한 장애인들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장애는 개인과 그 환경간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결의하여, 세계 장애인의 해의 주제를 완전참여와 평등으로 확대할 것을 결정하였다.

장애인복지란 인간권리의 존중에서 비롯된다. 기회의 균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념 실현을 위해서도 장애인복지란 중요하다. 오늘날 장애인 복지의 주요 이념은 정상화와 통합화이다. 즉 장애인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12) 박옥희, 전게서, 1998.7.20, p34

13)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1998. 2.10. p644

<그림2.2> 장애인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자료 : 이홍재, “장애인 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장애인복지법제」, 법제처, 1989, p12

이처럼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顯在的 障礙人’과 ‘潛在的 障礙人’ 사이에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다.¹⁴⁾

장애인 기본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생존권)이지만 인간다운 생활권은 그 하층구조인 근로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상호 연대적 보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려면 일정한 소득보장 및 의료

14) 이홍재, “장애인 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장애인복지법제」, 법제처, 1989.12.26, p12, 여기서 장애를 사회성 관점에서 파악하여 장애인을 “예비적 장애인” 또는 “잠재적 장애인”과 “현재적 장애인”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잠재적 장애인”과 “현재적 장애인”의 차이는 산업사회에 내재하는 생활위험의 구체적인 발현 여부에 지나지 않으며,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같이 완전하고 평등한 기본적 인권의 주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장과 복지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장애인의 절차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제2절 장애인 편의시설의 의의

1. 장애인과 물리적 환경개선의 의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 물리적 환경개선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1993년 12월 20일 제48차 UN총회에서 제정한 “장애인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규정은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물리적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실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정보와 의사전달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¹⁵⁾ 물리적 환경개선은 정상화(normalization)라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이 건축이나 교통분야에 파급되어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온 것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또한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장애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정책과 재활영역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달라진다. 또한 동일한 장애유형에 속하는 대상집단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하위유형에 따라 복지욕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개인별 특성, 장애의 종류 및 정도, 그리고 복지욕구에 맞게 설계된 특화된 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⁷⁾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환경개선 또한 장애인의 니드(need)에 의하여 특화된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물리적 환경개선의 갖는 의미는 장애인에 대한 전인적 능력개발과 사회적 불리를 제거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성을 갖는다 하겠다.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음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 접근에 제약을 받는 것이며 결국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평

15) W. Goodman, 정립희관(역), “장애인의 이동훈련”, 1995 : P13

16) 에이타 야시로 외, 송역욱(역), “ADA충격”, 한국장애인연맹출판부, 1993 : p150

17) 박옥희 외,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104

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자유로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다시말하면 사회적 불리(handicap)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하여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장애인 편의시설과 접근권의 관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들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나 결함에 의해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에 대한 불완전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제거하기 위한 기구나 시설, 설비를 말한다.¹⁸⁾

이러한 편의시설의 확보는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자립적으로 영위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질 확보를 통한 인간권리의 회복이며, 나아가서는 일반사회와의 통합을 통한 복지사회의 구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편의시설의 기능은 첫째 장애인의 신체상의 불리함을 보완하여 이동이나 활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장애인의 정신적 측면에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력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게 된다. 넷째, 사회적 측면에서 광범하게 보면 장애인의 고용이나 취업을 확대시킴으로써 어려움을 해소하게 된다.¹⁹⁾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건물 내부시설과 외부시설 그리고 매개시설, 공통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물 내부와 외부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매개시설 등의 유기적, 연계적으로 배치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그 특징이 있다 하겠다. 즉 건물 내부만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도 건물 외부시설이 잘 되어 있지 못하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며, 혹은 건물 내부에 있어서도 건물 내부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의 유기적,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못하면 결국 장애인은 이동의 단절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 1층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잘 갖추어 놓았다고 해도 대상 건물까지 이동하는데 편의시설이 잘 설치

18)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설계자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000.6.13, p36

19) 서선호, “우리 나라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p17~18

되어 있지 못하면 대상 건물을 이용하데 한계를 느낄 수 있으며, 또는 대상 건물내에서도 2층으로 이동하는데 편의시설이 없다면 1층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에게는 이동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편의시설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표2.5>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분류	종류
건물외부시설	보행로, 도로, 교통도로 등 통행로, 각종 설치물, 교통시설 등
매개시설	주차장
건물내부시설	계단, 출입구, 통로,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등
공통시설	정보통신시설, 안내표지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감에 있어서 기초이념이 중요하며 어떻게 편의시설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접근방법의 선택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대해 편의증진법에서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기본이념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접근’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접근, 경제적 접근, 물리적 접근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의미에 따라 각각의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²⁰⁾ 먼저 사회적 접근은 사회에서 장애인을 인식하는 방법과 이 시기의 변화를 위한 균등한 기회제공의 보장 등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의미한다. 즉 장애인의 물리적인 활동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의 설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적,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 및 정책의 마련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을 의미한다.

두 번째의 개념인 경제적 접근은 사회적 접근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생활보호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에 의한 직접적인 소득보장과 시설 이용요금의 할인, 이용 교통비용 부담의 경감, 각종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 간접적인 소득보장 등을 들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이 직업을 통한 경제적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협의의 개념으로 물리적 접근이 있다 이는 장애인의 실

20) 조철호, “장애인을 고려한 도시가로 공간의 Barrier-Free”, 「재활」, 1994. 5, P5~6

질적인 이동권 확보와 정보이용에 대한 접근 등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자원과 각종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관련 정책들을 시행해 나갈 때 ‘접근’이라는 의미를 이동과 관련된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가 또는 사회적 인식이나 경제적 차원의 접근 등 광범위한 개념으로 파악하는가에 따라 관련 정책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한 접근을 사회적 인식이나 경제적 차원의 접근으로 파악한다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문화, 예술, 정보, 사회인식 개선 등 모든 정책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나 소극적 의미에서 파악한다면 주거, 교통, 도시공간에의 접근 등 이동성의 확보에만 관심을 가지는 한정된 정책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편의증진법²¹⁾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 문제를 소극적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본 연구 또한 편의증진법을 중심으로 소극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겠다.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접근권(right to access)이란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에 형성된 권리로, “국민주권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헌법상의 조항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볼 때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접근권”이란 자유권적 기본권 및 사회권적 기본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권리의 주체로 하여금 권리의 목적이나 대상에 근접하여 그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법률상 부여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기본권의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로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인식된다.²²⁾

장애인과 관련된 접근권의 의미는 법률상 접근권 자체를 기본권으로 보아 실제적 권리로 파악하는가 또는 자유권이나 사회권 등 기존의 실제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로 파악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장애인을 위한 접근권이 사회권적 기본권과 같은 실제적 권리로 파악되면, 이는 장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

2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4조에서는 ‘접근권’에 대하여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초조사”, p16

방, 재활보호, 부양조치와 이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국가가 마련한 정책과 제도, 기금과 공공시설, 편의시설 등과 같은 “복지원(source of welfare)”에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²³⁾ 그러나 접근권을 실체적 권리인 소득보장수급권, 의료보장수급권, 복지조치수급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적 또는 절차적 권리로만 파악한다면, 이와 관련된 재원이나 시설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수단의 마련과 주거공간에의 접근, 도시공간에의 접근, 교통시설에의 접근 등 물리적 시설에 대한 접근과 이동을 포함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서울시정개발원, 1995 : 17)

제3절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제도

1. 우리나라의 편의시설 관계법

우리나라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제31조(편의시설)에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나 규칙이 없었으며 단지 선언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았다.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규칙이 만들어진 것은 1995년의 일이었다.²⁴⁾

‘심신장애자복지법’ 등 관련법령 등은 계속 개정작업이 이어져 1985년에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장애인용 관람공간 확보 및 통로 경사로 설치, 1986년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장애인용 승강기와 화장실 부분 첨가, 1988년에 신설된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와 제55조에 장애인용 승강기와 화장실의 구조를 규정하는 등 법령의 제 개정을 통한 편의시설을 확대코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89년 12월 30일에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1990년 12월 1일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정을 강화

23) 강경선, “접근권이란 무엇인가?” 「함께걸음」, 1994

———, “법률적 의미로 본 장애인 접근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7주년 기념

심포지움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자료집, 1994, p24

24) 전용호, 「좋은 사회를 위한 장애인 복지론」, 학문사, 2000.3.10. P423~424

하면서 좀더 구체적이며 강제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즉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편의시설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까지 규정하여 강제성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은 교통시설에 철도역사, 지하철 역사 등은 포함하면서도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택시, 지하철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있어 편의시설 증대에 한계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또한 제2항에서 규정한 세부 설치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인 편의시설의 개선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하다가²⁵⁾,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뒤 5년만인 1994년 12월 30일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보건복지부령 제1호)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보완 등이 필요하였으며, 1995년 12월 30일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복지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시설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편의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 편의시설 설치 규칙 역시 장애인의 이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실제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 전반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이동과 건축물 및 정보 등에의 접근을 포괄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못했으며, 또한 강제규정도 50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을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전히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는 한계를 나타내었으며 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욕구가 증대하게 되어 1996년도 하반기부터 국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대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11월 30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접근과 사회적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보장기본법안’과 12월 2일에 신한국당의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양당의 제안 설명 및 토론을 통해 이 두 법안을 조정하여 대안으로 편의증진법안을 1996년 12월 16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이듬해 1997년 2월에 열렸던 임시국회에 상정되었다.

25)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계서, 2000. 6. 13. p35

이렇게 해서 편의증진법안은 1997년 3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4월 10일 법률 제5332호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1998년 2월 24일에는 편의증진법 시행령이 대통령 제15,675호로 제정되었고, 1998년 4월 11일에는 동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64호로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일종의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동 법률의 대상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으며(제2조), 제4조에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이동과 접근권 보장을 명문화하였다. 이 조항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인정한 진일보한 시각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한 조항이며, 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권은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절차적 권리로서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인식될 수 있다.²⁶⁾

이러한 편의증진법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첫째는, 설치대상의 확대로서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건물 등에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을 넓히는 것이며, 둘째는 이 법의 실효성 문제로 법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일을 예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법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형벌로서 벌금형을 도입하도록 했다. 셋째는, 편의시설 설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이다. 이 기금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연구와 설치의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서이다.

편의증진법은 본문 29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정의,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접근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대상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시설주의 의무, 설치의 지원, 적용의 완화, 시설이용상의

26)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게서, 2000. 6.13. p38.에서는 접근권을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절차적 권리인 청구권적 기본적으로 보고 있으며, 아울러 장애인의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여 보면 실체적 권리인 복지조치수급권으로 설명할 수 있다.(법제처, 장애인복지법제, 1989.12.26. p14~15)

편의제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설치, 시정명령, 청문절차, 벌칙,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편의증진보장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스스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있다.(제1조) ②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으로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③ 장애인들에 있어 시설과 설비 및 정보에의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으며(제4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등 접근에 제약받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제7조) ⑥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하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8조)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⑧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실태조사²⁷⁾를 실시해야 하며, 편의시설 촉진을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11조, 제12조)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⑩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15조), ⑪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점역 안내 책자 등을 비치하여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도록 하였다.(제16조)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제18조~제21조) ⑫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27)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법시행규칙 제4조)

있으며(제23조) 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제25~27조) ⑭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강제이행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으로 정하는(제28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외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

미국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교통, 건축, 통신, 정보의 접근성을 의미하는데, 이것 역시 고용, 거주지의 선택, 교육 등에 있어서 인종, 종교,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일절 폐지하고 전국민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한 미국 시민권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고 있다.²⁸⁾

교통부분에 있어서는 1973년 재활법 504조, 1964년의 도시대중교통법(Urban Mass Transportation), 1990년 장애인법(ADA)에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1973년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개정에서 장애인 교통문제의 주요한 논점은 주류화(Mainstream)인가 아니면 이원체계인가라는 문제였는데 주류화란 대중교통수단을 정비하여 장애인이 모두 탈 수 있게 하는 방법인 반면 이원체계란 장애인, 노인을 중심으로 리프트가 달린 차량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좁고 적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원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서부지역에서는 주류화에 기초한 교통정책을 펴고 있다.

1973년 개정 재활법 504조는 미국의 자격있는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원조를 받고 있는 어떠한 계획이나 사업으로부터 배제 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동 규정은 노선버스의 50%에 리프트를 설치하되 만일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원체제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1990년 장애인법에서도 두 가지 방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 장애인 교통에 대한 다른 법률 하나는 도시대중교통법을 들 수 있다.

도시대중교통법은 1964년 제정되어 1970년 개정하면서 장애인교통정책을 명문화 하였다. 동 법은 장애인, 노인이 공공교통시설이나 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교통계

28) 나운환외 7인, 「비교장애인복지정책」,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6.12, p46

획, 운행에 있어 그들을 배려한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 장애인 교통정책의 기본적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여 장애인이 미국 사회에서 경제, 사회의 주류에 합류하도록 하기 위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는 실행 가능한 기준을 만들고 연방정부가 그 기준을 실시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한 장애인법(ADA)에 있다²⁹⁾. 또한 동 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교통에 한정시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법(ADA)에 나타난 교통정책의 주요한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⁰⁾

첫째, 교통의 이원체계를 공공교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까지 이원체계를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정도의 수단으로 삼아 왔으나 장애인법(ADA)은 공공교통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장애인이 노선버스, 철도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대중교통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이원체계를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 장애인의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규정은 1968년 건축장벽철폐법과 1990년 장애인법(ADA)에서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건축장벽철폐법(Architectural Barriers Act of 1968)은 1968년 제정되어 교통, 주택 등에 있어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첫째, 공공건축물, 기념건조물, 공원, 유원지, 공공교통기관, 주택 등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에 대해 이를 대체할 방법을 연구, 검토하다. 둘째, 연방, 주, 지방정부, 기타 공공 또는 비영리기관이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모든 공공시설은 장애인접근표시(Access symbol) 사용을 촉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장벽제거를 위한 노력은 장애인법(ADA)에도 찾아 볼 수 있다. 동 법에서는 공중시설 장소를 소유, 대여 혹은 운용하는 민간업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성 편의시설 장소

29) J.Edward Kellough and Robert C.Gamble.1995.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Implications for Public Personnel Management*, Prentice-Hall, Inc. p250~251

30) 나운환외 7인, 전게서, 1996.12, p48

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³¹⁾

첫째, 이용할 장애인의 종별을 한정하거나 자격요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

둘째, 건축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없는 한 장애인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적절한 배려를 하거나 방침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없는 한 보조기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법이 제정되고 30개월 이후에 건설되는 시설은 건축 상 불가능하지 않는 한 장애인이 이용가능 하게 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는 건축부분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확대문자나 녹음 테이프 등으로 준비하는 것 등도 포함되는 것이다.

여섯째, 가능한 한 기존 건축물이나 기존 교통기관의 장벽을 제거한다. 제거작업이 불가능할 때에는 장벽제거에 대신할 방법을 제공한다.

일곱째, 공공장소의 개조정비 중 턱에 슬로프를 설치하는 작업은 지체없이 시행한다.

여덟째, 3층 미만의 시설, 층별로 270㎡(3,000평방 피트)미만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 설치의무가 없다.

아홉째, 민간클럽이나 종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열 번째, 법원은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처음일 때에는 5만불, 이 이후에는 10만불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또한 장애인법(ADA)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 중 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텔, 모텔 등 숙박시설로 5실 이상인 시설

둘째, 레스토랑, 바 또는 식품, 음료 등을 제공하는 시설

셋째, 영화관, 극장, 콘서트홀, 스튜디오 등 전시나 모임시설

넷째, 공회당, 회의장, 강당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시설

다섯째, 빵집, 식품점, 의류점, 철물점, 쇼핑센터 등 판매 또는 대여시설

31) 나운환외 7인, 전게서, 1996. 12, p49~50

여섯째, 자동세탁소, 드라이 클리닝, 은행, 이발소, 미용원, 구두 수선소, 장 의사, 주유소, 회계나 변호사 사무소, 약국, 보험회사, 보건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 병원 기타 서비스 시설

일곱째, 대중교통 터미널 시설

여덟째, 박물관, 도서관, 갤러리, 기타 공공의 전시시설

아홉째, 공원, 동물원, 유원지 기타 레크레이션 시설

열 번째, 보육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하는 교육시설

열한 번째, 복지시설 등 서비스기관

열두 번째, 체육관, 헬스, 온천, 불링장, 기타 운동 또는 운동시설

일본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정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모든 장애인들이 생활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체적인 장벽을 제거해 주고자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1993년 12월에 개정된 장애인기본법(障害者基本法)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첫째,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관공청 시설, 교통시설, 기타의 공공시설을 장애인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공공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 등에 관해 배려해야 한다.

둘째, 교통시설, 기타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사회연대의 이념에 입각하여 해당 공공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 등에 관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사업주가 설치하는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 등에 관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건축물, 도로, 교통터미널 등에 있는 물리적 장애의 제거, 정보수집, Communication에 있어서의 Handicap 경감 등, 생활·환경면에서 각종 개선은 장애인이 자립하고 사회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촉진함에 있어 기초적인 조건이므로 그 개선에 가일층 힘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생활·환경면에서 개선추진은 정부, 지방공공단체, 민간사업자, 국민이 일체가 되어 대처할 과제로 정하고 있다.³²⁾

핀란드에서는 1969년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기준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캐

32) 권도용, “일본의 장애인 복지행정”, 「장애인 고용」, 1995. 봄호

나다에서는 1965년 기준, 공공건축물과 공장에 적용토록 편의시설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산업표준(DIN)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기 규정이 모든 도로 건설시 적용되고 있다.

<표2.6> 국내외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항목 비교

구분	기 준 항 목		
미국	접근로, 들출물, 바닥면, 주차장 및 승강장, 연석경사로, 경사로, 계단, 엘리베이터 리프트, 창문, 문, 출입구, 식수대, 좌변기, 변소, 소변기, 세면대와 거울, 옥조, 샤워실, 화장실, 욕실, 싱크, 보관함, 난간/손잡이/옥조 및 샤워용 의자, 조작 및 작동기, 경보기, 경고표시, 표식, 전화, 고정좌석 및 탁자, 집회구역, 자동응답기(ATM), 탈의 및 갱의실		
일본	공공적 건축물	이동	접근로, 주차장, 현관주변, 경사로, 출입구, 옥내통로, 옥내계단, 손잡이
		시설, 설비	화장실, 변소, 세면소, 욕실, 샤워실/갱의실, 객실/침실관람석/객석, 옥상/발코니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설비	카운터/기재대, 공중전화/우편함, 자동판매기/식수대, 콘센트/스위치
		정보, 유도	표시/유도, 긴급시의 설비
	공공교통기관 도로, 공원	승강장, 안내방식(시각, 청각, 촉각), 버스 및 열차, 보차분리, 보도의 유효폭, 횡단보도, 단차, 보도포장배수구, 벤취	
한국	도로, 횡단보도, 지하도/육교, 장애인용주차장, 출입구/문, 경사로, 복도,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시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장애인용관람석/열람석, 장애인용 접수대/작업대, 대표소/판매기/음료대, 교통시설, 버스, 철도, 도시철도차량, 공중전화, 우체통,		

이상과 같이 대략적인 외국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본 정책을 살펴 보았다. 이를 세부적 규정항목에 대하여 비교해보면 <표2.6>과 <표2.7>과 같다.

<표2.6>은 미국의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와 일본의 동경도의 복지거리를 만들기 위한 정비지침(東京都における福祉のまちづくり整備指針, 1987)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대상시설 즉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을 대상으로 20여 개 기준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의 3개국 기준 안에서 제시된 기본항목을 각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7> 국내외 기준의 기본항목 비교

대분류	소분류	국 가 기준항목	외 국							국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스웨덴	핀란드	일본	
건축 시 설	내부	경사로(내부) 1	○	○	○	○	○	○	○	○
		복도 2	○	○	○	○	○		○	○
		계단 3	○	○	○	○	○	○	○	○
	매개	출입구 4	○	○	○	○	○	○	○	○
		주차장 5	○	○	○	○		○	○	○
		접근로 6	○	○	○	○	○	○	○	○
	외부	보도 7	○	○		○		○	○	○
		횡단보도 8							○	○
		경사로(외부) 9	○	○	○	○	○	○	○	○
이동 설 비	승강기 10	○	○	○	○	○	○	○	○	
	에스컬레이터 11							○	○	
	전용 리프트 12								○	
위생 시 설	화장 실	대변기 13	○	○	○	○	○	○	○	○
		소변기 14	○	○	○	○		○	○	○
		세면대 15	○	○	○			○	○	○
	욕실	욕조 16							○	○
		샤워실 17							○	○
		탈의실 18							○	○
정 통 신	공중전화기 19	○	○	○	○	○	○	○	○	
	우편함 20				○		○	○	○	
	표식 21	○					○	○	○	
교 통 설 비	매표소 22								○	
	자동발매기 23							○	○	
	개찰구 24							○	○	
	승강장 25						○	○	○	
기 타 시 설	식수대 26	○	○		○			○	○	
	계산,작업대 27							○	○	
	조명 28									
	자판기 29								○	
	벤치 30							○		
	관람석 31				○		○	○	○	
	스위치류 32	○	○	○	○		○			

<표2.6>과 <표2.7>은 조철호³³⁾의 국내외에서 여러 기준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공간별, 시설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결과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조철호의 분류에서는 보사부의 “장애인편의 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 1994, 보건사회부”에 의거 편의

33) 조철호,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 설정 및 장애별 항목분류”, 한국아·태장애인10년 연구 모임, 장애인 환경접근에 관한 정책대안 보고서, “효율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방안”, 1997. 3

시설 기본항목을 추출하였으나 현재는 편의증진법(1997)이 제정된 상태에 있어 동 자료를 편의증진법에 규정된 세부기준 항목과 비교 분석하였다.

<표2.7>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나라의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설치 시설 대상물에 대한 규정은 외국에 비해 미약하지 않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의시설 기준은 선진국에서와 같이 치밀하고 엄격하게 되어 있지 않다. 첫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新건축물 및 증·개축건물 부위에 적용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것이 증명되거나, 안보적 목적의 관측장소, 사다리의 이용 혹은 기어오르는 곳, 비좁은 길,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관리 및 수리를 위한 장소 등으로 정하고 있다.

둘째, 법이 요구하는 설치시설의 강도도 다르다. 우리의 경우 설치 의무시설과 권장시설로 구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최소설치기준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의무적 설치를 요하는 편의시설을 예로 들면 진입로 및 돌출부위제거는 모든 건물 및 시설에 적용되고, 대형 건물에는 출입구 및 주차구역 등이 의무적 편의시설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비교된 선진국은 모든 명시된 편의시설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강제조항 이외에도 최소 설치 규정³⁴⁾을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신건축물 및 시설은 물론 기존 시설의 건물 증·개축에도 적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그대로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개념으로 의무적 설치의 시설이 거의 대부분이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하고 있어 보편적 적용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편의시설설치기준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시설의 제한되고 최소조건이 선진국 수준에 못미침은 우리의 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열등하고 우리의 경제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순일외, “장애인·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12 : P40 재인용)

34) 최소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편의시설로는 진입로, 돌출부위의 제거, 지표 및 마루바닥, 주차지역, 화장실, 건물표식, 건물내외의 계단, 하나의 엘리베이터(3층이하의 건물 및 쇼핑장이 아닌 층당 3,000스퀘어 필트 이하의 시설은 예외, 또한 기타 엘리베이터의 대용물 예컨대 리프트가 있는 시설 등은 예외) 창문, 문, 비상구, 음료대, 화장시설, 보관소, 선반, 전시장소, 감지경보기, 공중전화, 고정 및 이동식 의자와 테이블, 집회장소, 자동응답기, 탈의실 등이 있다.

제4절 연구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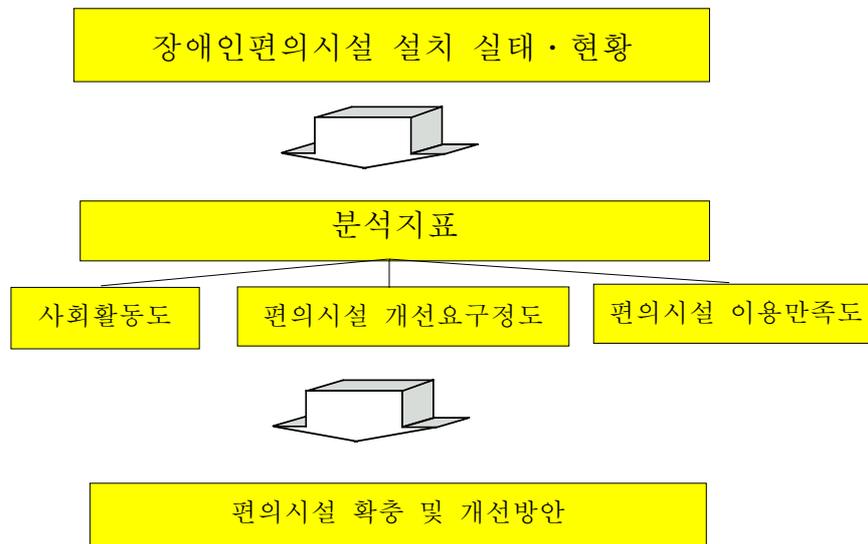
1. 분석틀의 구성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편의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얼마나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와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욕구분석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편의증진법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 설치 실태 및 현황 분석과 아울러 사회활동도와 편의시설개선요구정도 그리고 편의시설 이용만족도에 대한 욕구분석을 통하여 장애인의 긴요성과 이용성, 연계성 측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방안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림2.3> 연구 분석의 틀 도해



2. 분석 요소

가. 장애인의 사회활동도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기에 장애인의 사회활동정도를 분석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정도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이 긴요성과 이용도를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외출과 외출과 관련된 교통수단, 및 외출시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용정도를 조사분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이용도가 높은 건축물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 등의 편의시설을 찾아내어 편의시설의 효율적 확충방안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욕구정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시급성에 따라 투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부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 즉 도로, 보도 및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도와 편의시설의 개선욕구 그리고 설치 우선 순위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다.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현재 정부에서는 편의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제주도인 경우 2000년4월10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비율이 74.7%라고 한다.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하여 면접한 다수의 장애인들은 아직도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완전히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며, 직접적으로 실감하는 편의시설의 개선정도는 미약하다고 한다.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이용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의 느끼는 편의시설이 가장 잘 설치된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가장 열악한 곳, 그리고 현재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편의시설의 수요자인 장애인들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보았다.

라.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방안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욕구(need)에 따라 설치되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³⁵⁾

이를 위하여는 장애인의 기본적 욕구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적절하고 유효하게 설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의 중점은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에 중심을 두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3. 조사설계 및 내용

가. 조사 설계

본 연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따른 편의시설의 편의성과 긴요성, 그리고 편의시설 이용만족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개선 및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서적과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였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일정한 문항의 편의시설 조사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찰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활동도, 편의시설 개선요구정도, 편의시설 이용만족도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방안(1997. 12)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도의 현실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작하였다.

1) 관찰조사

제주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를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4개 지역(조천, 세화, 애월, 한림), 남제주군 4개 지역(성산, 대정, 표선, 남원)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편의시설실태파악 관찰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조사 분석하였다<부록 1 관찰조사체크리스트 참조>.

지역별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상권의 중심지를 선택하여 조사하였으며

35) 송영욱, 「소비자의 입장에서 장애인복지를 생각한다,」 서울DPI,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의 사회활동」, 1999. 4.9, 에서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설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의 소비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머지 8개 지역은 각 지역의 中心街 즉 번화가(대도로변)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대상조사구간의 편의시설물은 관공서, 교육시설, 금융시설, 문화·교통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근린시설(약국,서점), 대형매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집밖에서의 사회생활 단절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도로 및 보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각 건축물에 대하여 화장실, 공중전화, 자동판매기, 출입구, 승강기, 주차장, 계단, 경사로, 복도, 작업대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장애인전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장애인이 이용가능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장애인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였다.

2) 설문조사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활동도, 편의시설 개선욕구, 편의시설 이용만족도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현실에 맞추어 설문지를 제작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장애인의 사회활동도와 편의시설설치 및 개선 요구정도, 편의시설 이용만족도 및 편의시설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2.8> 설문조사 내용구성

주제	요인	세부항목	비고
사회활동도	① 일반외출(직장, 학교 제외)에 관련한 사회활동도	① 일주일에 외출정도	
		② 외출의 목적?(직장, 학교 제외)	
		③ 외출시 주요 교통수단	
		④ 외출시 보장구의 필요여부	
	② 직장에 관련한 사회활동도	① 현재 직장에서의 종업원의 규모?	
		② 직장까지의 출퇴근 수단?	
		③ 직장까지 출퇴근하는데 불편함?	
		④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③ 학교에 관련한 사회참여도	① 학교까지 등하교 수단?	
		② 등하교하는데 불편함?	
		③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요구정도	① 시설물별 개선요구정도	① 자주이용하는 시설물
② 도로에 대한 개선 필요정도			
③ 건축물에 대한 개선 필요정도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①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①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의 만족정도	
		② 편의시설의 가장 잘 설치된곳(3가지)	
		③ 편의시설의 가장 필요한곳(3가지)	
	② 편의시설확충방안	①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③ 편의증진관련기금의 활용방안	① 편의증진관련기금의 활용방안	

나. 연구의 대상 및 표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관찰조사를 위하여 일정한 문항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은 편의증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사항들을 점검하고 실태파악을 하여야 했으나 한정된 조사인원을 가지고 전 시설을 조사하기에는 불가능하여 장애인복지관련 종사자들과 탐

라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편의증진법에 규정된 시행대상시설 중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도로 및 보도, 횡단보도의 편의시설 실태와 관공서, 교육시설, 금융시설, 문화교통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근린시설(약국, 서점 등), 대형매점으로 분류하여 화장실, 공중전화, 자동판매기, 출입구, 주차장, 계단, 경사로, 복도, 작업대 등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의 설치여부 기준은 편의증진법의 설치기준 適合 여부로 판단하였으며 비록 장애인 전용표시는 없으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게 설치된 것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설문조사인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위하여 제주DPI 회원들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체장애인은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회원 및 제주DPI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제주도지부의 회원과 제주도안마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158부의 설문지를 조사원이 직접 조사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하고 154부(회수율97.4%)를 연구·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지 내에서 경험을 하지 않았거나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응답하지 않도록 했으며, 그 결과 무응답으로 나타난 항목은 통계처리에서 제외(missing value) 처리시켰다. 따라서 문항별로 유효표본수가 다소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제 3 장 제주도 장애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분석

제 1 절 제주도 장애인 현황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법에 정의되어 있는 장애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발달(자폐증), 정신, 신장, 심장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에 있어서 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여러 장애유형 중 지체,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편의시설 욕구정도가 지체 및 시각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

음을 감안함 물론 편의시설은 가장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면 모든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감안한 따름이다.

<표3.1> 제주도 등록장애인 현황 (2000. 6. 30현재)

(단위 : 명 %)

장애유형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발달(자폐증)	정신	신장	심장
등급장애											
계	계	10,626 (100%)	6,710 (63.1)	170 (1.6)	1,080 (10.2)	878 (8.3)	1,341 (12.6)	4 (0.1)	122 (1.1)	258 (2.4)	63 (0.6)
	남성	6,777 (63.8%)	4,518 (42.5)	92 (0.9)	645 (6.0)	514 (4.8)	745 (7.0)	3 (0.1)	70 (0.6)	146 (1.4)	44 (0.5)
	여성	3,849 (36.2%)	2,192 (20.6)	78 (0.7)	435 (4.2)	364 (3.5)	596 (5.6)	1	52 (0.5)	112 (1.0)	19 (0.1)
1급		1,413 (13.3)	500	59	333	10	473	1	27	7	3
2급		2,384 (22.4)	1,102	60	74	399	498	1	41	188	21
3급		2,310 (21.8)	1,610	33	69	142	360	2	54	1	39
4급		1,800 (16.9)	1,566	9	39	181	4			1	
5급		1,317 (12.4)	1,155	4	74	21	2			34	
6급		1,402 (13.2)	777	5	491	125	4				

자료 : 제주도(2000. 6.30)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등록장애인 다수가 지체장애인(63.1%)이며, 다음으로 정신지체(12.6%), 시각장애인(10.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장 편의시설을 필요로 하는 계층인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이 전체장애인의 73.3%를 차지하고 있어 그만큼 이들에 대한 편의시설의 중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아울러 지역별로 등록장애인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수의 장애인들이 제주시(42.3%)에 분포해 있고 다음으로 북제주군(24.7%)에 분포해 있어 제주시 지역의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장애인 편의시설은 완전한 이동성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계성 있는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감안할 때 제주도 전 지역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표3.2> 지역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10,626 (100%)	4,496 (42.3)	1,728 (16.3)	2,625 (24.7)	1,777 (16.7)
지체	6,710	2,840	1,075	1,652	1,143
뇌병변	170	89	20	35	26
시각	1,080	457	195	283	145
청각·언어	878	379	120	242	137
정신지체	1,341	512	227	335	267
발달(자폐증)	4	3	1	-	-
정신장애	122	44	40	25	13
신장장애	258	140	42	40	36
심장장애	63	32	8	13	10

자료 : 제주도(2000. 6.30)

그러나 제주도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제주도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을 위한 시설주에 대한 지원과 매개시설물의 편의 시설 확충, 편의시설연구를 위한 예산 등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에 의하며 각 기관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형태로만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

<표3.3> 제주도 장애인 복지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항목		개소	지원액	비고
장애인복지 시설 지원	소계	11	2,939	
	장애인재활 시설지원	3	357	국비:70, 도비:30
	장애인생활 시설지원	1	296	국비 70,도비15,시군15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	3	1,867	국비40, 도비60
	장애인의료재활시설지원	1	212	국비30,도비50,자담20
	그룹홈,주간보호시설지원	3	207	국비40,군비60
장애인복지 시설확충	소계	2	1,512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1	1,079	국비50,지방비5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확충	1	433	국비50,지방비50
장애인관련 단체지원		7단체	558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3,006명	936	
합계			5,945	

자료 : 제주도(2000. 11)

또한 본 조사에서는 <표3.2>의 장애유형별 지역별 등록장애인수를 감안하여 표본 크기를 정하였는데,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 106명(68.8%), 시각장애인 48명(31.2%)을 조사하였으며,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74명(48.1%), 서귀포시 31명(20.1%), 북제주군 27명(17.5%), 남제주군 25명(16.2%)을 조사하여 표본조사의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최종학력을 보면 무학(17.7%)이거나 초등학교졸업자(13.0%)가 24.7%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교육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⁶⁾

36)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우리나라 평균교육수준을 보면 초졸이하가 26.6%로 조사되었으나 조사시점을 감안할 때 5년 주기로 조사될 때마다 초졸이하 학력수준이 10%정도로 낮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현 2000년도에 초졸이하가 20%이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표3.4> 표본조사대상자의 유형분석

구분	유효한 응답자수	유효퍼센트	비 고
장애유형	지체장애	106	68.8
	시각장애	48	31.2
	합계	154	100
성별	남자	111	72.1
	여자	43	27.9
	계	154	100
장애등급	1급	74	48.1
	2급	31	20.1
	3급	32	20.8
	4급	11	7.1
	5급	4	2.6
	6급	2	1.3
	합계	154	100
거주지역	제주시	71	46.1
	서귀포시	31	20.1
	북제주군	27	17.5
	남제주군	25	16.2
	합계	154	100
최종학력	무학	18	11.7
	초등학교	20	13.0
	중학교	18	11.7
	고등학교	58	37.7
	전문대학	6	3.9
	대학교이상	17	11.0
	특수학교 중등부	4	2.6
	특수학교 고등부	12	7.8
	무응답	1	0.6
	계	15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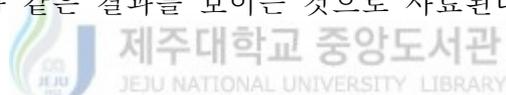
또한 조사대상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30대의 장애인(40.9%)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따라서 동 연구결과에서도 이들의 성향이 많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3.5> 장애유형별 · 연령분포별 조사대상자수

(단위 : 명, %)

장애유형	연령분포						합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지체	0	15(14.1%)	52(49.1%)	22(20.8%)	9(8.5%)	8(7.5%)	106(100%)
시각	2(4.2%)	14(29.1%)	11(22.9%)	8(16.7%)	5(10.4%)	8(16.7%)	48(100%)
합계	2(1.3%)	29(18.8%)	63(40.9%)	30(19.5%)	14(9.1%)	16(10.4%)	154(100%)

장애유형별 그리고 장애등급별 직업종사유형을 분석하여 본 결과 조사대상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인 경우 32.2%의 장애인들이 실업자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시각장애인인 경우 판매/서비스업에 조사대상 장애인의 68.8%가 종사하고 있어 지체장애인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시각 장애인인 경우 안마사법에 의한 자격요건³⁷⁾으로 인하여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로 취업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또한 안마사협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3.6> 장애유형별 직업종사별 조사대상자수

(단위:명,%)

구분	직업분포										집단 합계
	농업·어업· 임업	자영업	판매/서비스	기능·숙 련업	사무·기 술	경영관리	전문·자 유직	가정주부	무직	기타	
지체 장애	10 (9.4%)	14 (13.2%)	11 (10.4%)	10 (9.4%)	8 (7.5%)	2 (1.9%)	6 (5.7%)	10 (9.4%)	34 (32.1%)	1 (1.0%)	106 (100%)
시각 장애	2 (4.1%)		33 (68.8%)						13 (27.1%)		48 (100%)
합계	12 (7.8%)	14 (9.1%)	44 (28.6%)	10 (6.5%)	8 (5.2%)	2 (1.3%)	6 (3.9%)	10 (6.5%)	47 (30.5%)	1 (0.6%)	154 (100%)

37)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중학교 과정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사를 제외하면 시각장애인의 대다수가 실업 상태에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대상의 30.5% 장애인이 무직으로 실업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어 장애인의 실업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高失業 문제에 직면한 장애인들의 월평균 소득 또한 일반인의 평균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었는데 조사대상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인 경우 58.5%, 시각장애인인 경우 27.1%가 한달 평균소득이 60만원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로 인한 고통과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수의 장애인들이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표 3. 7참조>

<표3.7> 장애유형별 소득별 조사대상자수

(단위: 명,%)

장애등급	한달총수입							합계
	20만원이하	21-40만원	41-60만원	61-80만원	81-100만원	100만원이상	무응답	
지체장애	36 (34.0%)	14 (13.2%)	12 (11.3%)	8 (7.5%)	5 (4.7%)	16 (15.1%)	15 (14.2%)	106 (100%)
시각장애	3(6.3%)	4(8.3%)	6(12.5%)	3(6.3%)	16(33.3%)	11(22.9%)	5(10.4%)	48 (100%)
합계	39 (25.3%)	18 (11.7%)	18 (11.7%)	11 (7.1%)	21 (13.7%)	27 (17.5%)	20 (13.0%)	154 (100%)

열악한 경제적 여건의 주요원인으로 장애인들의 고실업 상태로 인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장애인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의식조사결과 조사대상 장애인 중 장애유형에 관계없이($p > 0.05$) 실업상태의 장애인 58.6%가 자신의 장애로 인해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대답했으며,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13.8%), 편의시설부족(12.1%)로 대답하고 있는 반면 기능,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실업인 경우에는 10.3%정도로 대답하고 있어 조사대상 장애인들은 실업의 원인이 개인적 측면의 기술이나 기능보다는 사회인식문제나 편의시설부족 등 사회적 측면에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표3.8> 실업장애인들의 취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인식분포

(단위: 명,%)

장애유형	취업이 안되는 이유						집단합계
	편의시설 부족	기능.기술 부족	정보부족	장애로 인해	장애인고용 기피	기타	
지체장애	7(15.6%)	6(13.4%)	1(2.2%)	22(48.8%)	7(15.6%)	2(4.4%)	45(100%)
시각장애				12(92.3%)	1(7.7%)		13(100%)
집단합계	7(12.1%)	6(10.3%)	1(1.7%)	34(58.6%)	8(13.8%)	2(3.5%)	58(100%)

$$x^2=8.318, \quad df=5, \quad p=0.140$$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주거형태를 분석해 보면 조사대상 장애인의 55.9%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아파트(12.3%)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 분석해 보면(p < 0.05) 지체장애인들인 경우 60.4%의 장애인들이 단독주택에 주거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11.3%의 지체장애인들의 아파트에 주거하고 있는 반면, 시각장애인 경우 45.8%가 단독주택에 주거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기숙사(25%)에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치가 도출된 데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로 많이 취업하고 있었으며, 안마사로 취업할 경우 안마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에 많이 주거하고 있는 원인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표3.9>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주거형태

(단위 : 명, %)

장애유형	주거형태							집단합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기숙사	공동숙소	기타	
지체장애	12(11.3%)	64(60.4%)	7(6.6%)	11(10.4%)	-	2(1.9%)	10(9.4%)	106
시각장애	7(14.6%)	22(45.8%)	1(2.1%)	5(10.4%)	12(25%)	1(2.1%)		48
집단합계	19(12.3%)	86(55.9%)	8(5.2%)	16(10.4%)	12(7.8%)	3(1.9%)	10(6.5%)	154

$$x^2=33.871, \quad df=6, \quad p=0.000$$

또한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주택소요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49.4%의 장애들이 자신의 주택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전세(11.3%), 기타(11.3%)순

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장애유형에 따른 분석에 있어서 $p > 0.05$ 로 장애유형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체장애인들의 자가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하여 시각장애인인 경우 무료임대주택(22.9%)이나 전세(20.9%)집에 많이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10>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주택소요여부 교차표

(단위 : 명, %)

장애유형	주택소요여부						집단합계
	자가	전세	월세	영구임대	무료임대	기타	
지체장애	57(53.8%)	12(11.3%)	10(9.5%)	5(4.7%)	10(9.4%)	12(11.3%)	106
시각장애	19(39.6%)	10(20.9%)	4(8.3%)		11(22.9%)	4(8.3%)	48
집단합계	76(49.4%)	22(14.3%)	14(9.1%)	5(3.2%)	21(13.6%)	16(10.4%)	154

$\chi^2=10.437, df=5, p=0.064$

제2절 제주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제주도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54.0%로 조사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북제주군 56.9%, 제주시 54.5%, 서귀포시 53.1%, 남제주군 50.7%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동 조사는 도로·보도의 이동성을 고려한 조사 등을 결하고 있었으며, 또한 노면상태 및 돌출물, 보도의 유효폭, 버스 및 택시의 승강장 편의시설, 보도의 장애인용 공중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결하고 있고 단지 횡단보도의 단차 제거와 점자블럭의 설치여부에 대하여만 조사하고 있었다. 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장애인용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복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 자동판매기 등에 대한 조사와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합성 등에 대한 조사를 결하고 있어 동 제주도의 조사자료만으로는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의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의 편의시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일정한 문항으로 작성된 관찰조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조사원이 직접 관찰조사 하였으며, 관찰조사에 사용된 체크리스트는 편의증진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규정 중 의무조항과 장애인들에 대한 면접조사결과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항목을 추출하여 선행연구38)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표3.1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단위 : 개소, %)

시군별	대상 시설수	편의시설 설치수	점자블럭	높이차이제거	출입구	복도	계단밧승강설비	화장실	주차장	매표소	기타
계	2,377	5,131	886	1,565	890	404	189	237	244	9	707
		9,488	1,501	2,332	1,267	1,267	552	831	602	45	1,701
		54.0	59.0	67.1	70.2	31.8	34.3	28.5	40.5	20.0	41.5
제주시	1,071	2,550	441	778	442	201	93	117	121	5	352
		4,672	689	1,028	590	317	315	438	302	40	953
		54.5	64.0	75.6	74.9	63.4	29.5	26.7	40.0	12.5	36.9
서귀포시	506	985	168	297	169	76	36	45	46	2	146
		1,852	344	515	232	135	109	156	140	2	216
		53.1	48.8	57.6	72.8	56.2	33.0	28.8	32.8	100	67.5
북제주군	393	836	143	253	144	65	31	38	39	1	122
		1,467	225	383	216	90	104	116	46	2	328
		56.9	63.5	66.0	66.6	72.2	29.8	32.7	84.7	50.0	37.1
남제주군	407	760	134	237	135	62	29	37	38	1	87
		1,497	243	406	229	115	67	113	45	1	201
		50.7	55.1	58.3	58.9	53.9	43.2	32.7	84.4	100	43.2

※ 자료 : 제주도(1999.12.31)

관찰조사 체크리스트는 도로·보도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관한 9문항, 횡단보도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관한 3문항, 화장실의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5문항, 공중전화 1문항, 자동판매기 2문항, 출입구 4문항, 승강기 4문항, 주차장 3문항, 계단 4문항, 경사로 2문항, 복도 2문항, 작업대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1, 관찰조사체크리스트 참조>

동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제주도 자료를 단순 비교해 보았을 때 동 조

38) 홍영기, 「장애자 소비생활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소비자보호원, 1988)에서 사용한 장애인편의시설 체크리스트를 재구성

사에서는 제주시 지역이 대체적으로 나머지 지역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북제주군과 서귀포시, 남제주군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제주도자료에서는 북제주군,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순으로 조사되고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동 조사와 제주도에서 조사한 조사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보여진다.

1. 도로 · 보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도로 및 보도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하여는 편의증진법에 특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지역의 도로 및 보도의 편의시설 상태 파악에 있어 다분히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를 최대한 객관화하기 위해 조사지역의 도로 및 보도의 상태를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를 평균하여 평가하였다.

우선 조사대상 구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연계성 있게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조사의 초점을 두어 평가하였다.

또한 도로 및 보도에 있어서 점자블럭 설치의 편의증진법 상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되어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도·노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47.80%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율은 46.25%로 전체적으로 기준 이하에 있었다. 대체적으로 전신구 등 돌출물이 많고 보도의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의 설치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지역을 평가했을 때 1.55%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점자블럭이 설치된 지역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진 1> 좁은 보도폭 및 불규칙한 노면



또한 도로 및 보도에 설치된 장애

인용 전화기 설치율을 보면 전체 설치율 대비 장애인용 전화기 설치가 11%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용 공중전화기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 및 보도에 설치되는 공중전화기는 넓이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음으로 전화기 설치시 설치높이를 낮추고 폭을 넓혀 장애인은 물론 어린이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표3.12> 도로, 보도 편의시설 설치현황

(단위 : %)

내용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평균
평 균	65.08	45.11	50.82	27.76	47.80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서 이동가능 여부	87.5	35	50	12.5	46.25
보도블럭 포장시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공여부	87.5	70	87.5	37.5	70.62
보도블럭면이 평탄여부	81.2	60	50	12.5	50.92
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덮개설치 및 평탄하게 시공여부	81.2	60	81.2	62.5	71.22
차도와 보도의 구분	81.2	65	87.5	68.7	75.60
전신구 등 돌출물 여부	62.5	45	51.2	12.5	42.80
점자블럭 설치여부	6.2	0	0	0	1.55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보도폭 확보	87.5	60	50	43.7	60.30
장애인용 전화기	11%(8/67)	11%(5/45)	0%	0%	11%

가. 평점방법 : 조사대상구간을 관찰자가 5점척도(100:매우양호, 75:양호, 50:보통, 25:미흡, 0: 매우미흡)로 구분하여 평가한 것임.

나. 조사구간

제주시 : 세무서~시민회관, 문예회관~터미널, 중앙로타리~관덕정,
남문로타리~담동, 신제주 새한약국~그랜드호텔, 문화칼라~그랜드호텔
신제주로타리~코스모스호텔, 문화칼라~신제주로타리,
서귀포시 : 북초등학교~중앙로타리, 동문로타리~중앙로타리,
동부화재~동명백화점, 동문로타리~서귀포교회, 신시가지 현대APT~시청
북제주군, 남제주군 : 한림, 애월, 조천, 세화, 성산, 표선, 남원, 대정의
중심가를 중심으로 조사

횡단보도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에 가장 애로를 느끼며, 편의증진법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단차높이 제거에 대한 문항과 시각장애인용 신호기 설치,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횡단보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평균을 보면 34.23%로 나타나고 있어 횡단보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매우 미약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평가 대상시설별로 살펴보면 횡단보도의 단차 제거율이 53.9%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시 지역이 단차 제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용 신호기인 경우 설치율이 20.3%,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 설치율이 28%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지역을 제외하면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13> 횡단보도 편의시설 설치현황

(단위 : %)

구분	제주시 (N=38)	서귀포시 (N=25)	북제주군 (N=25)	남제주군 (N=25)	계 (N=113)
평균	68.36%	21.33%	9.33%	1.33%	34.23%
횡단보도의 단차(턱)제거	36(94.7%)	14(56%)	7(28%)	4(16%)	61(53.9%)
시각장애인용 신호기 설치	21(55.2%)	2(8%)	0(0%)	0(0%)	23(20.3%)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	21(55.2%)	0(0%)	0(0%)	0(0%)	21(28.5%)

횡단보도 편의시설인 경우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횡단보도 및 도로, 보도에 대한 장애인용 편의시설은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지역에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신호기를 설치하였으나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

<사진2> 횡단보도의 높은턱(단차)과 불규칙한 노면



이를 누눌 때만이 신호음이 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의 이용대상이 시각장애인임을 감안할 때 버튼식으로 시각장애이용 신호기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이다.

2.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설치율은 49.76%로 나타나고 있어 제주도에서 조사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54.0%<표3.11>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제주도의 조사방법과 동 조사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오차결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건축물 유형별로 보면 관공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59.54%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문화교통시설 51.28%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근린생활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30.75%로 제일 낮게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들의 실제 생활기반인 근린생활공간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찰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제주시 지역 설치율이 46.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서귀포시 39.84%, 북제주군 37.04%, 남제주군 34.53%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각 건축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14> 건축물에 대한 지역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단위 : %)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	남군	제주도설치율	비고
관공서	57.29	56.45	70.83	54.16	59.12	
교육기관	50	31.73	30.68	37.50	39.35	
금융기관	36.76	28.12	37.00	23.43	35.44	
문화및교통시설	49.04	59.52	36.84	57.14	51.29	
의료시설	55.73	52.00	37.24		52.56	
종교시설	37.29	31.58	41.21	34.76	37.05	
근린시설	39.25	29.00	25.0	25.00	30.75	
대형매장	43.06	30.35	27.18	15.09	38.11	
제주도 설치율	46.05	39.84	38.24	35.29	49.76	

1) 관공서

관공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치율이 59.12%로 다른 유형의 건축물보다 높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북제주군이 70.83%로 설치율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제주시 57.29%, 서귀포시 56.45%, 남제주군 54.16%의 순으로 설치율을 보였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별로 분석해 보면,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가 조사대상 건물 중 41%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는 94%로 대부분의 관공서가 장애인용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준 면적에 적합한 전용 주차장은 50%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으며,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볼 때 장애인 전용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관공서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분석해 볼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거의 없었다. <표3.15>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남녀표시 및 자동판매기, 출입구에 점자표시 및 안내판이 설치된 곳이 전혀 없었으며 주출입구의 점자블럭 설치율이 5%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관공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건물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2) 교육시설

교육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는, 전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교육수준³⁹⁾이 대체적으로 낮음에 비추어 볼 때 교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교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39.34%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이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시 지역의 설치율이 50.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남제주군 37.50%, 서귀포시 31.72%, 북제주군 30.68%순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였다.

39) 장애인에 대한 교육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본 조사에서는 26.1%가 초등학교 이하 졸업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1995년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는 62%이상이 초등학교 졸업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이 지체, 시각장애인과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제주도지부회원으로 한정하여 조사함에 따른 오차인 경우로 사료됨.

이를 편의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율이 조사대상의 38%에 지나지 않으며 출입구 턱낮추기를 한 경우가 15% 정도로 대부분이 교육시설물이 주출입구가 계단이나 턱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또한 장애인용 주차장인 경우 설치율이 15%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으며, 설치된 장애인용 주차장인 경우도 주출입구와 근접하여 설치된 경우가 15%정도밖에는 되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의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 주었다. 더욱이 장애인들이 교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내부시설물에 있었다. 도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도내 학교 시설물 중 내부에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 계단을 대체한 곳은 전혀 없었으며, 시각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물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편의증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한 기존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상건물에서 교육기관이 제외됨으로 인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촉구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기인한다고 하겠다.

3) 금융·대형매점 및 근린시설(약국, 서점)

금융시설이나 슈퍼마켓 등 대형매점 및 근린시설(약국, 서점)은 장애인들이 가장 빈번히 이용하지만 시설물 이용에 있어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는 욕구분석결과에서도 보여지며 이렇게 장애인들이 건물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은 대부분의 건물이 주출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으로 주출입구의 계단과 턱은 장애인과 사회를 가로막는 하나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체적으로 35.44%의 설치율을 보였으며 대형매장인 경우는 38.11%, 근린시설(약국, 서점 등)은 30.75%의 설치율을 보였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기관인 경우 서귀포시의 금융기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59.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남제주군 57.14%, 제주시 49.04%, 북제주군 36.84%의 설치율을 보였다.

근린시설인 약국이나 서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30.75%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를 지역적으로 분류해 보면 제주시 지역의 39.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귀포시 29.00%,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 25.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종류별로 살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금융기관 이용 행태를 볼 때 장애인용 주차장의 설치 및 주출입구의 경사로나

턱 낮추기 등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나 장애인용 주차장의 설치는 조사대상 금융기관의 12%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기준면적에 적합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설치된 주차장의 50%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더 주출입구 단차 제거율 조사대상의 37%정도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대형매점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율이 조사대상의 15%정도였으며 주출입구의 단차 제거율이 46%,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0%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러한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진다. 또한 약국이나 서점 등 근린시설물 또한 주출입구의 단차 제거율 23%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4) 문화 및 교통시설

문화 및 교통시설물에 대하여는 각 지역별로 문예회관이나 체육시설,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조사한 결과 설치율이 51.29%로 관찰조사 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귀포시가 59.52%로 설치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남제주군이 57.14%, 제주시 49.05%, 북제주군이 36.84%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중 그 긴요성을 요하는 장애인용 화장실이나, 장애인용 주차장, 계단손잡이 등이 설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장애인용 주차장인 경우 주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된 경우가 33%밖에 되지 않아 장애인용 편의시설의 이용과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었다.

5) 의료시설

의료시설인 경우 장애인들의 신체적 특성상 매우 필요한 시설물이며, 이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형병원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병·의원 등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들은 편의시설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동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재활을 위하여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병·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우선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병·의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설치율이 52.46%정도였으며, 지역적으로는 제주시 지역이 설치율이 55.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귀포시 52%, 북제주군 37.24%, 남제주군 0%의 순

으로 설치율이 조사되었다.

<표3.15> 공공건물 및 공중편의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구분	내 용	관공서 (n=17)	교육 시설 (n=13)	금융 시설 (n=16)	문화교통 시설 (n=9)	의료 시설 (n=8)	종교 시설 (n=15)	근린시 설 (n=21)	대형매 점 (n=13)	설치율 (n=112)
화장실	○ 화장실은 장애인들이 접근이 가능한가?	70	38	18	55	37	33		15	38.00
	○ 남녀표시(시각장애인식별)은 되어 있는가?	0	0	0	0	0	0		0	0.00
	○ 장애인용 전용화장실은 있는가?	41	23	6	33	25	6		0	19.14
	○ 화장실의 출입구 0.3m 전면에 점형블럭이 설치 되었는가?	0	0	0	0	0	0		0	0.00
	○ 장애인용 화장실의 규격은 적절한가? (폭 1.8m 넓이 1m)	75	100	100	100	100	0			79.16
공중전화	○ 장애인 전용전화기 혹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는 있는가? (주화투입 및 버튼 조작높이 0.9 ~ 1.4m이하)	81	40	66	75	66	37		45	58.57
자동판매기	○ 자동판매기 조작장치 높이(1.2m)는 적절한가?	93	80	100	100	100	50		50	81.85
	○ 자동판매기 조작장치에 점자표시는 ?	0	0	0	0	0	0		0	0.00
출입구	○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에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경사로가 설치되었는가?	94	15	37	77	50	40	23	46	47.75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는가?	5	0	0	0	0	0	0	0	0.62
	○ 문의 통과폭(0.8m)은 적절한가?	94	100	100	100	100	86	100	100	97.50
	○ 출입구 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0	0	0	0	0	0	0	0	0.00
승강기	○ 승강기내의 안전손잡이는 설치되어 있는가?					100			100	100.00
	○ 조작장치의 높이는 적절한가?(1.2m)					100			100	100.00
	○ 문의 개폐시간은 충분한가(10초이상)					75			100	87.50
	○ 층수를 알리는 방송시설은?					25			0	12.50
주차장	○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설치되어 있는가? (10대미만은 제외)	94	15	12	44	50	6		15	33.71
	○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었는가?	88	15	12	33	50	6		15	31.28
	○ 전용주차장의 면적은 적절한가? (수평 폭2m 길이6m, 수직 3.3m, 길이 5m)	50	50	50	50	50	100		100	64.28
계단	○ 계단양옆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23	7		22	12	28			18.40
	○ 동일계단에서 쉼면의 높이와 디딤판의 길이는 균일한가?	100	100		88	100	93			96.20
	○ 쉼면의 높이가 0.18m이하인가?	94	100		100	100	93			97.40
	○ 계단디딤판의 치수는 적절한가(0.28m이상)	100	100		100	100	100			100.00
경사로	○ 경사로의 손잡이는 설치되어 있는가?	41	11							26.00
	○ 경사로의 폭은 적절한가?(0.9~1.2m이상)	88	11							49.50
복도	○ 복도는 유효폭이 적절한가(1.2m이상)	100	100	87	100	87	100			95.66
	○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의 0.3m 전면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는가?	0	0	0	0	0	0			0.00
작업대	○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었는가?(0.7이상 0.9m 이하)	88		50		37				58.33
설치율		59.12	39.34	35.44	51.28	52.46	37.04	30.75	38.11	49.76

6) 종교시설

종교시설인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37.04%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지역적으로 북제주군이 41.2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제주시 37.27%, 남제주군 34.76%, 서귀포시 31.57%로 조사되어 종교시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매우 열악한 경우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율이 25%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주출입구 턱낮추기는 50%, 장애인용 주차장인 경우는 설치율이 50%정도밖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4 장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 및 문제점 분석

제 1 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분석

1. 장애인 사회활동도 분석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혼자서 주체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실증해 봄은 물론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설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도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장애인의 외출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해 보면 장애인의 외출빈도에 있어서 70.8%의 장애인이 거의 매일 내지는 일주일에 2~3회 외출을 하고 있었으며, 외출목적 또한 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외출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4.1> 조사대상 장애인의 외출빈도

(단위 : 명, %)

외출빈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비고
거의매일	60	39.0	39.0	
일주일2-3회	49	31.8	70.8	
일주일 1회	17	11.0	81.8	
1달 1-2회	14	9.1	90.9	
1년 2-3회	5	3.2	94.2	
전혀안감	9	5.8	100.0	
합계	154	100.0		

다음으로는 문화/여가/체육활동이 24.7%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방면에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앞에서 장애인들의 직업정도, 교육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들은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4.2> 조사대상 장애인의 외출목적

(단위 : 명, %)

외출목적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비고
사교/단체활동	21	13.6	13.6	
문화/여가/체육활동	38	24.7	24.7	
봉사활동	4	2.6	2.6	
일상활동	57	37.0	37.0	
직업/교육관련활동	6	3.9	3.9	
의료/보건활동	10	6.5	6.5	
종교활동	7	4.5	4.5	
기타	11	7.1	7.1	
합계	154	100.0	100.0	

<표4.3> 조사대상 장애인의 외출시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 1순위

(단위:명,%)

이용건축물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비고
슈퍼마켓	43	27.9	27.9	
은행	20	13.0	13.0	
약국	6	3.9	3.9	
시장	2	1.3	1.3	
이.미용실	8	5.2	5.2	
공중목욕탕	4	2.6	2.6	
식당.커피숍	3	1.9	1.9	
종교시설	6	3.9	3.9	
사회복지시설	16	10.4	10.4	
병의원	18	11.7	11.7	
시군청	2	1.3	1.3	
동사무소	1	0.6	0.6	
공원.유원지	2	1.3	1.3	
호텔.여관	7	4.5	4.5	
대형매점	13	8.4	8.4	
운동시설	1	0.6	0.6	
극장	1	0.6	0.6	
학교	1	0.6	0.6	
합계	154	100.0	100.0	

또한 외출할 때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로는 슈퍼마켓, 은행 등 근린생활시설 이용률이 40.9%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외출빈도가 높은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4.4> 조사대상 장애인의 외출시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 우선순위

(단위:%)

구분	1	2	3	4
1순위	슈퍼마켓 (27.9%)	은행 (13.0%)	병의원 (11.7%)	사회복지시설 (10.4%)
2순위	은행 (20.1%)	병의원 (11.0%)	사회복지시설 (9.7%)	슈퍼마켓 (9.1%)
3순위	병의원 (12.3%)	은행 (11.7%)	동사무소 (9.1%)	약국 (8.4%)

아울러 병의원 또한 자주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속해 있음(11.7%)을 볼 때 병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하나 관찰조사결과 주요지표들 즉, 장애인용 화장실, 주출입구 접근로, 계단편의시설, 경사로 등이 설치율이 50%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장애인의 외출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승용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34.4%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버스(21.4%), 택시(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분석해 보면($p < 0.05$) 외출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지체장애인인 경우에는 승용차 이용율이 46.3%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인 경우 외출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택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외출에 따른 편의를 주고 사회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별로 정책을 분리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지체장애인이 외출시 교통수단으로 승용차를 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원인은 지체장애인인 경우 신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융자혜택과 아울러 승용차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장애인이 승용차 구입에 따른 각종 혜택 등으로 인하여 교통수단으로 승용차 이용률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시각장애인인 경우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는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 중 택시 이용율이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기타사항인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제주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을 많이 이

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5> 장애유형 · 외출시 교통수단 교차표

(단위:명, %)

구분	도보	버스	택시	승용차	오토바이	휠체어	기타	계
지체장애	9(8.5)	24(22.6)	17(16.0)	49(46.3)	4(3.8)	3(2.8)		106
시각장애	10(20.8)	9(18.8)	13(27.1)	4(8.3)			12(25.0)	48
계	19(12.3)	33(21.4)	30(19.5)	53(34.4)	4(2.6)	3(1.9)	12(7.8)	154

$$\chi^2=49.837, \quad df=6, \quad p=0.000$$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택시 등의 이용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나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은 일상생활, 즉 슈퍼마켓, 은행,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거의 매일 또는 2~3회정도의 외출을 하고 있음으로써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출 목적 또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외출과 사교, 문화, 여가생활을 하기 위한 외출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외출을 위해 지체장애인은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시각장애인인 경우 주로 택시 등의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요구 정도 분석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고, 편의시설설치 종류에 대하여는 동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도 동 법률에 대해 외국의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비교해 보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 외국의

편의시설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을 살펴 보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재 편의증진법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도로·보도와 건축물로 나누어 장애인들이 이용에 있어 느끼는 설치정도와 개선요구정도 그리고 설치 우선 순위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도로·보도

우선 도로·보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장애인들의 느끼는 설치정도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도로·보도의 턱낮추기에 대하여 16.9%, 보도·노면상태에 대하여는 17.5%, 경사로인 경우 12.3%, 신호길이 13.6%, 보도의 유효폭이 36.4%만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도로·보도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인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중 4.2%, 음향신호기인 경우 6.3%만의 장애인이 대체로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6> 도로·보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도

(단위 : 명, %)

구분		대체로 설치	부분적 설치	설치안됨	합계
공통	턱낮추기	26(16.9)	56(36.4)	72(46.7)	154
	보도 노면상태	27(17.5)	59(38.3)	68(44.2)	154
	경사로	19(12.3)	52(33.8)	83(53.9)	154
	보도의 유효폭	56(36.4)	47(30.5)	51(33.1)	154
	신호길이	21(13.6)	34(22.1)	99(64.3)	154
시각	점자블럭	2(4.2)	13(27.1)	33(68.7)	48
	음향신호기	3(6.3)	16(33.3)	29(60.4)	48

동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만족도가 지체장애인 보다는 시각장애인들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편의시설 설치가 주로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설치됨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분석되어 진다.

도로·보도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요구정도에 대하여 편의시설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턱 낮추기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장애인의 58.4%가 편의시설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으며, 경사로인 경우 50.0%, 신호길이 67.5%, 보도·노면의 상태 48.7%가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표4.7>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개선 필요정도

(단위 : 명, %)

구분		개선필요	개선불필요	합계(N)
공통	턱낮추기	90(58.4)	64(41.6)	154
	보도 노면상태	75(48.7)	79(51.3)	154
	경사로	77(50.0)	77(50.0)	154
	보도의 유효폭	50(32.5)	104(67.5)	154
	신호길이	104(67.5)	50(32.5)	154
시각	점자블럭	20(41.7)	28(58.3)	48
	음향신호기	20(41.7)	28(58.3)	48

또한 시각장애인인 경우 점자블럭과 음향신호기의 개선욕구가 41.7%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아울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보도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우선 순위에 대한 장애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면 지체장애인 58.1%와 시각장애인 29.2%의 장애인이 1순위로 턱 낮추기를 선택하고 있었으며, 2순위로 지체장애인인 경우 경사로 설치 28.6%를, 시각장애인 경우 음향신호기 설치를 29.4%로 선택하고 있었다.

따라서 도로·보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턱 낮추기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편의시설로 나타나고 있으나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느끼는 턱 낮추기는 16.9% 정도밖에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또한 2순위 부터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 우선 욕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장애유형을 떠난 공통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우선하고, 다음으로 장애인 유형에 따른 緊要性을 요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표4.8> 조사대상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우선 순위

(단위 : 명, %)

구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106)	턱낮추기(58.1)	경사로(28.6)	신호길이(20.9)
시각장애(48)	턱낮추기(29.2)	음향신호기(29.4)	

나. 건축물

건축물 편의시설에 대하여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느끼는 설치정도를 조사 분석해 보면 공통사항으로 장애인용 주차구역 32.9%와 복도(유효폭, 손잡이) 30.5%를 제외하면 조사항목 대부분에 대해 응답자 30%미만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대체로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직까지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점자블럭이나 점자표시판 설치율은 전체 시각장애인들의 5%미만이 대체로 설치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어 건축물 역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9>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도

(단위 : 명, %)

구분		대체로 설치	부분적 설치	설치안됨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28(18.2)	47(30.5)	99(51.3)	154
	장애인용 주차구역	47(32.9)	56(39.2)	40(27.9)	143
	주출입구 단차제거	29(18.8)	47(30.5)	78(50.7)	154
	출입구(문)	49(31.8)	45(29.2)	60(39.0)	154
	복도(유효폭, 손잡이)	47(30.5)	45(29.2)	62(40.3)	154
	계단(유효폭, 손잡이)	35(22.7)	44(28.6)	75(48.7)	154
	경사로	30(19.5)	45(29.2)	79(51.3)	154
	승강기/리프트	25(16.2)	35(22.7)	94(61.1)	154
	장애인용 화장실	36(23.8)	52(34.4)	63(41.8)	151
	장애인용 공중전화	21(13.8)	37(24.3)	97(61.9)	152
	접수대/작업대	36(23.7)	33(21.7)	83(54.6)	152
편의증진요원배치	3(1.9)	21(13.6)	130(84.5)	154	
시각	점자블럭	2(4.2)	5(10.4)	41(85.4)	48
	점자표시판	1(2.1)	3(6.2)	44(91.7)	48

* 무응답자수 제외

아울러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요구를 조사해 보면 장애인용 주차구역에 대한 편의시설 개선요구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장애인용 화장실 48.4%, 주출입구 접근로 46.1%순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따라서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요구정도를 분석해 보면 장애인용 주차구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편의증진법 규정에 적합함을 떠나 일단은 다수의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용 주차구역에 대한 개선필요 요구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는 앞에서의 관찰조사 결과와 외국의 설치규정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용 주차구역의 규격 상에 문제보다는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되어 진다. 관찰조사를 위하여 여러 지역의 시설물을 조사하여 본 결과 많은 장애인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여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주차장 규격이 너무 좁거나 주출입구와 멀리 떨어져 있어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용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표4.10>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요구정도 (단위 : 명, %)

구분		개선필요	개선불필요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71(46.1)	83(53.9)	154
	장애인용 주차구역	83(57.2)	62(42.8)	145
	주출입구 단차제거	56(36.4)	98(63.6)	154
	출입구(문)	60(40.0)	94(60.0)	154
	복도(유효폭, 손잡이)	52(33.8)	102(66.2)	154
	계단(유효폭, 손잡이)	66(42.9)	88(57.1)	154
	경사로	55(35.7)	99(64.3)	154
	승강기/리프트	50(32.5)	104(67.5)	154
	장애인용 화장실	74(48.4)	79(51.6)	153
	장애인용 공중전화	56(36.4)	98(63.6)	154
	접수대/작업대	35(22.7)	119(77.3)	154
	편의증진요원배치	42(27.6)	110(72.4)	152
시각	점자블럭	20(41.6)	28(58.4)	48
	점자표시판	20(41.6)	28(58.4)	48

* 무응답자수 제외

<표4.11> 장애유형별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106)	장애인용 주차구역(39.6)	계단손잡이(16.9)	장애인용화장실(20.9)
시각장애(48)	점자블럭(35.4)	점자표시판(22.9)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10.4)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조사대상 장애인들이 가장 먼저 설치를 원하는 편의시설물은 지체장애인들인 경우는 장애인용 주차구역의 설치를 우선 원하고 있었으며(39.6%), 2순위로는 계단손잡이 설치 16.9%, 다음으로 장애인용 화장실 20.9% 순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인인 경우 1순위로는 점자블럭(35.4%)설치를, 2순위로는 점자표시판(22.9%)을 응답하였으며 3순위로는 주출입구 접근로와 경사로를 조사대상 시각 장애인의 10.4%가 응답하여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우선 순위가 다름을 보여주었다.

3.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만족도 분석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관찰조사 결과나 장애인들의 외출경향 및 정도분석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도를 분석해 볼 때 아직까지 많은 부분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行態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이용에 있어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우선 조사대상 장애인들이 느끼는 우리 나라 및 거주지역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도를 분석하여 보면 장애유형에 관계없이($p > 0.05$)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장애유형 별로 분석해 보면 47.2%의 지체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41.5%의 장애인들이 일부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전시효과에 불과하다고 느끼고 있음에 따라 전체적으로 88.7%의 장애인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불만족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표4.12> 우리 나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만족도 분석

(단위 : 명 %)

장애유형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전시효과에 불과하다	일부 시설은 도움이 된다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다	계
지체장애	50(47.2)	44(41.5)	10(9.4)	2(1.9)	106
시각장애	25(52.1)	22(45.8)	1(2.1)	-	48
집단합계	75(48.7)	66(42.9)	11(7.1)	2(1.3)	154

$$\chi^2=3.713, df=3, p=0.294$$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52.1%의 장애인들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48.5%의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시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97.9%의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지체장애인 보다는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함을 보여주었다.

거주지역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만족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편의시설 설치 만족도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 장애인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거주지역에 대하여 전국보다는 불만족스런 결과를 보여 주었다.

<표4.13> 거주지역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만족도 (단위 : 명, %)

장애유형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전시효과에 불과하다	일부 시설은 도움이 된다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다	계
지체장애	67(63.2)	27(25.5)	10(9.4)	2(1.9)	106
시각장애	34(70.8)	12(25.0)	2(4.2)	-	48
집단합계	101(65.6)	39(25.3)	12(7.8)	2(1.3)	154

$$\chi^2=2.378, df=3, p=0.498$$

이를 장애유형별로 거주지역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보면 지체장애인 경우 63.2%의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인 경우 70.8%의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p > 0.05)

여기에서 유의할 부분은 조사대상 장애인들이 우리 나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만족도에 비해 거주 지역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각종 조사자료를 비교해 볼 때 제주도인 경우 他 道와 비교할때 편의시설 설치율이 결코 낮지 않음에 비추어 보아 이용 만족도가 거주지역에서 낮게 조사되고 있는 것이다.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지역적으로 분석해 보면 제주시 지역 57.7%, 서귀포시 64.5%, 북제주군 70.3%, 남제주군 84.0%의 순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었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지역에 관계없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표4.14> 지역별 조사대상자 편의시설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전시효과에 불과하다	일부시설은 도움이 된다.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다.	계
제주시	41(57.7)	23(32.4)	6(8.5)	1(1.4)	71
서귀포시	20(64.5)	10(32.3)	1(3.2)	-	31
북제주군	19(70.3)	4(4.8)	3(11.2)	1(3.7)	27
남제주군	21(84.0)	2(8.0)	2(8.0)	-	25
계	101(65.6)	39(25.3)	12(7.8)	2(1.3)	154

$$\chi^2=11.376, \quad df=9, \quad p=0.251$$

또한 조사대상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슈퍼마켓, 은행, 병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가장 잘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로는 사회복지시설, 시군청, 동사무소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잘 설치된 건축물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었다.

<표4.15> 장애유형별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비고
지체장애	슈퍼마켓(30.1)	은행(26.4)	병의원.동사무소 (12.3)	
시각장애	슈퍼마켓(22.9)		은행(14.6)	

<표4.16> 편의시설이 가장 잘 설치된 건축물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비고
지체장애	사회복지시설(45.3)	시군청(18.9)	동사무소(17.9)	
시각장애	사회복지시설(60.4)	시군청(23.0)	동사무소(16.7)	

아울러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지체장애인 24.5%와 시각장애인 25.0% 모두 병의원을 선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지체장애인은 은행 13.2%, 시각장애인은 공중목욕탕의 편의시설 설치가 14.6%를 응답하였다.

결국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가장 잘 설치된 곳,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가장 필요한 건축물간에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요인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 재원을 효과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결국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만족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표4.17> 편의시설이 설치가 가장 필요한 건축물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비고
지체장애	병의원(24.5)	은행(13.2)	병의원(11.3)	
시각장애	병의원(25.0)		공중목욕탕(14.6)	

제2절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

1. 장애인의 사회활동도

장애인의 사회활동도를 조사·분석해 보았을 때 70.8%의 장애인이 거의 매일 내지는 일주일에 2~3회 외출을 하고 있었으며 외출목적 또한 주로 일상생활(37.0%)과 문화/여가/체육활동(24.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아울러 조사대상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은 슈퍼마켓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은행 13.0%, 병의원 10.4%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들이 외출에 있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은 근린생활 시설중심으로 생활하며, 외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표3.15>을 보면 근린시설, 금융시설, 의료시설의 주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장애인용 화장실, 주출입구, 접근성, 장애인용 주차장, 계단)이 대부분 50%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었고 이 중 관공서가 평균 설치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관찰 조사되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가장 잘 설치된 건축물<표4.16>로 사회복지시설과 시군청, 동사무소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설로서 병의원과 은행, 공중목욕탕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외출시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율이 높은 시설물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재 제주도의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의 利用頻度와 緊要度를 고려하지 않고 편의시설을 관공서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사회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육, 직업 등에서 많은 부분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의 교육정도와 실업을 그리고 직업분포 등으로 분석해 볼 때 대부분의 장애인들의 교육수준이 낮고, 실업율이 높으며, 직업분포에 있어서도, 시각장애인의 직업적 특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영업 을 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다양한 방면에서의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활동에 있어서는 외출정도를 볼 때 왕성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욕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욕구를 분석해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신호길이 개선에 대하여 응답자 중 67.5%가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턱 낮추기 58.4%, 보도·노면 상태의 개선 50%로 응답하였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중 횡단보도 턱 낮추기 실태를 보면 <표3.13>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전도평균 53.9%를 턱 낮추기 하였으며, 제주시인 경우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94.7%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아직까지 거리의 높은 턱으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는 <표4.8>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도로·보도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우선 순위를 턱 낮추기 58.1%로 가장 높게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사로 28.6%, 신호길이 20.9% 순으로 지적하고 있어 이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턱 낮추기를 시행함에 있어 휠체어 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이 턱을 넘어 이동할 수 있는지, 혹은 시각장애인들이 턱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배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횡단보도 신호길이에 대해서도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개선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 너무 짧은 신호길 이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여유있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기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개선요구를 분석해 보면, 관찰조사를 통한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도는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주요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용 화장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용 주차장 등) 설치율이 50% 미만으로 관찰조사 되고 있었으며<표3.15>, 실제 장애인들의 느끼는 설치율도 대부분 시설물이 50% 미만으로 조사되고 있었다<표4.9참조>

<표4.18> 주요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성 분석

(단위 : %)

구분	내 용	관공서 (n=17)	교육 시설 (n=13)	금융 시설 (n=16)	문화교 통시설 (n=9)	의료 시설 (n=8)	종교 시설 (n=15)	근린 시설 (n=21)	대형 매점 (n=13)	설치율 (n=112)
화장실	o 화장실은 장애인들이 접근이 가능한가?	70	38	18	55	37	33		15	38.00
	o 장애인용 전용화장실은 있는가?	41	23	6	33	25	6		0	19.14
출입구	o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에 턱받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경사로가 설치되었는가?	94	15	37	77	50	40	23	46	47.75
주차장	o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설치되어 있는가? (10대미만은 제외)	94	15	12	44	50	6		15	33.71
	o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었는가?	88	15	12	33	50	6		15	31.28
계단	o 계단양옆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23	7		22	12	28			18.40
경사로	o 경사로의 손잡이는 설치되어 있는가?	41	11							26.00
	o 경사로의 폭은 적절한가?(0.9~1.2m이상)	88	11							49.50
복도	o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의 0.3m 전면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는가?	0	0	0	0	0				0.00
설치율		59.88	15.00	14.16	37.71	32.00	17.00	23.00	18.20	29.30

※자료 : 관찰조사결과 장애인의 이동성을 감안하여 주요 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추출하여 분석한 자료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편의성을 분석해보면<표4.18>과 같이 기본적인 주요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물의 설치율이 매우 저조할뿐더러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조차도 장애인의 이용에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중의 하나인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나, 정작 장애인의 화장실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거나(접근 가능성 측정 38%), 장애인용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주출입구 근접한 곳에 설치된 경우가 31.29%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하기 보다는 법률상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의무부담금을 면제받고자 설치되었음을 짐작케 하였다.

또한 건축물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요구정도를 분석해 보면 장애인용 주차장의 개선욕구가 57.2%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표4.10 참조> 장애인들의 주요 외출 수단이 승용차(34.4%)인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편의시설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보인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우선 순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설치 우선 순위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용 주차장 39.6%, 계단손잡이 16.9%, 장애인용 화장실 20.9%로 시각 장애인 점자블럭 35.4%, 점자표시판 22.9%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지체장애인의 장애인용 주차장에 대한 개선 욕구와 건축물에 있어서 시각장애 <사진4>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고 있는 실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들의 개선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은 건축물에 있어서 장애인용 주차장이 없거나 부족한 것(표 3.15의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율이 33.17%)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관리 및 운용의 문제, 즉 장애인용 주차장 및 장애인용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운용 및 관

리에 있어 형식적인 운용-장애인용 주차장에 일반차량 주차, 장애인용 화장실의 청소 도구함으로 이용되는 등 형식적 운용-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3.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욕구, 이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 행정적인 장

에인 편의시설 설치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앞에서 보았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그 이용대상이 장애인인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들이 생활과 이용빈도, 이용자수, 연계성, 긴요도에 따라 설치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시설함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낮게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이용만족도를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선 <표4.12>, <표4.13>에서 보았듯이 우리 나라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하거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시효과에 불과하다고 느끼고 있는 장애인들이 전체의 91.6%나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지역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매우 부족하거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시효과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장애인들이 조사대상 장애인 전체의 90.9%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유의할 부분은 조사대상 장애인들이 우리 나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만족도에 비해 거주 지역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주도의 경우 각종 조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이 결코 낮지 않음에 비추어 보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방법이나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되지 않은 결과, 즉 장애인의 이용에 따른 욕구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보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각장애인인 경우 97.9%의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거나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전시효과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어 지체장애인 88.7%보다 훨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불만족스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장애유형을 감안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은 물론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아울러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을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증장애인과 시각,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이를 이용하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낮은 장애인들에게도 편의함을 주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제주시 지역이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비해 장

에인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있으나 이 지역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57.7%의 불만도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장애인 인구분포를 보면 제주시 지역이 42.3%를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3개 지역에 비해 장애인 밀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장애인 밀집도를 감안한 편의시설 확충방안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5 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편의증진방안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편의증진법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시설주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계층의 욕구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계층의 수요 욕구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도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이를 완전히 해결할 방안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과 무한한 수요 욕구들 사이에서 적절한 편익-비용 원리⁴⁰⁾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갈등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편의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 당하고 있는 계층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에서는 재원의 한계를 떠나 인간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모든 최선의 노력을 해야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편의시설 확충 정책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요인과 한계 등으로 인하여 현실상 많은 부분에서 편의시설의 확충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용 대상인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편의시설의 이용여부, 이용에 따른 불편정도, 긴급도 등에 대한 욕구조사 없이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앞에서 나타났듯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이용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아울러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 편의시

40) 박순일의, 「장애인·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방안」, 1997.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90에서는 편익-비용의 원리를 “정책의 개발 및 기금의 효율적 이용을 이용을 위하여서, 혹은 정책의 한계순편익이 모든 투자대상에서 일치하는 수준까지 각종 편의시설 및 방법에 투자하는 최적 방안”이라 설명하고 있다.

설을 설치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원칙 및 제고요인을 바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즉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1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제고요인 설정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있어 먼저 고려해 할 여건⁴¹⁾은 첫째 향후 정책이 적용되고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투자될 편의시설 이용대상자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매우 광범위하다. 둘째, 이들의 거주분포도 일정한 곳에 몰려 있기보다는 일반인 가구에 혼재되어 있다. 셋째, 이들이 이용하는 대상 시설은 일반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어서 양적으로 매우 많고 다양하며, 지역적으로도 분산되어 있어 편의시설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려면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고려해야 할 여건과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욕구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종합해 보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고요인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의 緊要度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을 들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緊要度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건축물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는 정도를 말하며,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이나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緊要度를 분석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들의 필요로 하는 시설물의 우선 순위는 다르게 나타나며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긴급도 분석에 있어서 우선 고려해야 할 변수이다.

둘째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도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들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도는 건축물의 장애인 이용정도를 말하며, 이용도가 높은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41) 박순일, 「장애인·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방안」, 1997.12. P190

으로는 장애인들의 선호도와 밀집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에서 장애인들의 선호도는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도를 말하며, 장애인들의 밀집도는 대상 지역의 장애인들의 주거분포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선호도와 장애인 밀집도는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도 측정에 있어서 우선 고려해야 할 변수들인 것이다.

셋째는 장애인 편의시설 연계도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을 들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연계도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물외부시설과 건물내부시설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시설 및 공통시설에 대한 연속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도를 말한다. 만약 연계성 없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을 때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연계도 측정에 있어서 건물외부시설, 건물내부시설, 매개시설 및 공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우선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다.

1. 장애인 편의시설의 緊要度

장애인 편의시설은 그 이용대상이 비록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자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 자원 투자에 있어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 즉 장애인들의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편의시설에는 우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에 긴요도를 갖는 편의시설물은 비록 그 이용도가 적더라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장애인 편의시설 긴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고해야 할 사항으로는 장애인 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가 다름에 따라 장애인들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우선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며, 따라서 장애인 긴요도를 분석할 때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우선 순위와 시각장애인의 설치 우선 순위가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우선 순위를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정도에 따라서 편의시설의 긴요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즉 중증장애인들은 같은 편의시설이라도 그 긴요도가 경증장애인에 비해 매우 클 것이며, 또한 경증장애인들이 그다지 필요치 않은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화장실 편의시설 등-에 대한 긴요도 큰 반면, 경증장애인들인 경우 계단에 손잡이

설치로 충분히 이동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장애정도에 따른 분석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편의시설물 중 가장 긴요도가 높은 건축물로는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병·의원과 은행, 공중목욕탕 등으로 나타났다. 대상 편의 시설로는 도로·보도의 경우에는 턱낮추기, 경사로, 음향신호기, 신호길이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편의시설물로는 지체장애인 경우 장애인용 주차구역, 계단손잡이, 장애인용 화장실 순으로 나타났고, 시각장애인인 경우 점자블럭, 점자표시판, 주출입구 접근로 및 경사로 순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긴요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장애인 편의 시설 이용도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들 수 있다.

현재 장애인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높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장애인 이용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그 한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이용도를 고려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재원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 활동성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적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도 제고를 위해 감안해야 할 사항으로는 장애인 밀집도, 선호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밀집도가 높은 지역과 장애인들의 선호하거나 접근하기 쉬운 시설물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두어 공급하는 것이 단위당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의 주로 선호(자주 이용하는 건축물)하는 건축물로는 슈퍼마켓, 은행, 병·의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 외출에 따른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버스, 택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우선 순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 편의시설의 연계성

개별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만으로는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편의증진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개별 건축물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만, 장애인들이 건물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또는 개별 건물 내에 일부분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매개시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전히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는 계속 남아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건물내부시설과 매개시설 그리고 건물 외부시설 및 공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연속적 확충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활동유형별 주요 시설 및 공간에 어떠한 편의시설이 공급되어야 할 것인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시설물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장애인의 이동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건물외부시설이나 매개시설물 혹은 건물내부시설 등에 연속적으로 설치 되어 있지 않으면 장애인 편의시설 연계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찰조사 결과 많은 시설물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너무 전시적이고 시각적인 효과만을 고려한 나머지 장애인들의 이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연계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이용 효율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재원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면, 대상 건축물에 주출입구 경사로와 장애인용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 건요도 측정에서 보았듯이 장애인용 경사로는 장애정도 즉,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건물내부에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시설이 건물 내·외부 중 한곳에만 설치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연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장애인이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재원의 낭비를 초래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제2절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편의증진방안

1. 장애인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의 강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이 장애인들에게 갖는 긴요도와 장애인들의 이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연계성 있게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장애인들의 가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병·의원, 공중목욕탕과 같은 건축물과 아울러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슈퍼마켓, 은행 등 일상생활중심의 근린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책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사회복지시설, 시·군청, 동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장애인들의 긴요성 및 이용도가 낮음으로 인해 결국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의 장애인용 주차구역 마련과 계단손잡이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순으로 지체장애인들은 응답하고 있었으며,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블럭, 점자표시판, 주출입구 접근로 및 경사로 순으로 설치 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동 편의시설 설치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등의 편의시설이 미약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공급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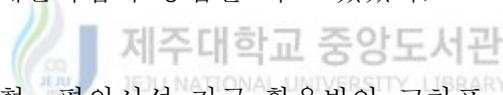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모든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보다는 대상 편의시설의 집중화로 정책 및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장애인들의 이용도 즉 장애인들의 밀집도 및 장애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시설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단위

비용당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즉 장애인들의 선호도가 높아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인 슈퍼마켓, 은행, 병원 등과 아울러 인접지역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접근의 용이성을 높임과 아울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의증진법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주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편의시설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원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분석 등이 더욱 중요하다.

조사대상 장애인의 편의시설기금의 활용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본 결과 장애유형별로 유의수준(p) > 0.05이므로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할 것이나, 지체장애인의 41.5%가 편의시설 설치 건물주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응답하고 있었으며, 시각장애인인 경우 27.1%의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건물주에 대한 지원과,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응답을 하고 있었다.



<표5.1> 장애유형 · 편의시설 기금 활용방안 교차표 (단위 : 명, %)

장애유형	편의시설 설치 건물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에 대한 주택 개조비 지원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 홍보 사업	편 의 시 설 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기타	전체
지체장애	44(41.5)	27(25.5)	20(18.9)	12(11.3)	3(2.8)	106
시각장애	13(27.1)	10(20.8)	12(25.0)	13(27.1)		48
계	57(37.0)	37(24.1)	32(20.8)	25(16.2)	3(1.9)	154

$$\chi^2=9.167, \quad df=4, \quad p=0.057$$

또한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방안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장애인의 외출시 승용차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나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도 40.9%로 이용하고 있어, 다수의 장애인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지체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전용버스 운용을 가장 우선 순위로 두고 있으며 다음으로 차량구입 용자확대를 원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막(음성)안내방송과 교통비 일부지원을 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전용버스의 운용을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5.2> 장애유형 · 대중교통 편의증진방안 일순위 교차표 (단위 : 명, %)

장애유형	장애인 전용버스의 운영	장애인 전용택시의 운영	교통비 일부지원	장애인 차량구입 용자확대	자막(음성)안내방송	정차호출 램프설치	편의증진 요원 배치	기타	합계
지체장애	44 (41.5)	10 (9.4)	19 (17.9)	22 (20.8)	2 (1.9)	2 (1.9)	2 (1.9)	5 (4.7)	106
시각장애	10 (20.8)	2 (4.2)	15 (31.2)	2 (4.2)	15 (31.2)	2 (4.2)	2 (4.2)		48
계	54 (35.1)	12 (7.8)	34 (22.1)	24 (15.6)	17 (11.0)	4 (2.6)	4 (2.6)	5 (3.2)	154

$\chi^2=43.087, df=7, p=0.000$

또한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와 같은 서비스의 도입 및 비용을 지원하여 증대된 편의시설의 이용도를 높여 정책의 효과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편의시설확충 방안에 대해 장애유형별로 분석하여 보면 <표5.3>와 같이 유의수준 $p > 0.05$ 나타나 장애유형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체장애인 경우 42.5%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건물주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응답하고 있었으며, 시각장애인인 경우 31.2%가 장애인 전용시설제도의 도입을 우선 순위로 응답하고 있었다.

<표5.3> 장애유형 · 편의시설 확충방안 교차표

(단위 : 명, %)

장애유형	편의시설 설치 건물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거주주택 개조비 지원	장애인도우미 등 편의증진 요원 배치	일반인.건물주에 대한 홍보와 교육	장애인 전용시설제도의 도입	기타	전체
지체장애	45(42.5)	18(17.0)	8(7.5)	12(11.3)	22(20.8)	1(0.9)	106(100)
시각장애	12(25.0)	10(20.8)	6(12.5)	5(10.5)	15(31.2)		48(100)
계	57(37.0)	28(18.2)	14(9.1)	17(11.0)	37(24.0)	1(0.7)	154(100)

$$\chi^2=5.872, \quad df=5, \quad p=0.319$$

3. 장애인의 이동 연계도를 감안한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이 이용도와 필요도를 감안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지만 이들간에 편의시설 연계성이 없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개별 편의시설은 무의미하며 장애인들의 이동제약에 따른 불만족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다. 즉 개별 건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으나 이러한 개별 건물에 접근하지 못 한다면 건물에 설치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그 활용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같은 건물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일부에만 설치된다면- 많은 경우 1층에만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경사를 설치하고 2층 내지는 그 외 층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어 이동의 단절될 경우- 그 건물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그 효용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건물 외부시설과 매개시설, 건물내부시설에 연계성을 갖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만이 장애인 편의시설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강화

편의증진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는 동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 대상건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을 애매하게 규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나친 부담의 정도나 그 배려의 정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설주나 집행자 모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현재 편의증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기존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서는 교육기관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동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는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교육기관은 제외됨으로써 장애인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장애인을 위한 법에서 제한시키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편의증진법 전체가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많은 편의시설물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으나 정작 이동권의 확보차원에서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교통수단의 문제라든가, 보장구의 문제 등은 제외되어 있으며 아울러 이동권의 확보에 상당한 제약을 주고 있는 각 건축물의 계단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있어서는 법 규정 자체가 미약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각 건축물 내에서의 층수에 구분이 없이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의무적으로 시행될 때 장애인들 좀더 자유스럽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5. 교육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강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헌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는 장애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조사된 장애인들의 교육수준을 보면 조사대상 장애인중 24.7%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60.4%의 장애인들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장애인 실업률이 30.5%로 전체 실업률이 10%미만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물리적 여건, 즉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내의 교육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교육기관에 장애인을 위한 주요시설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편의증진법 조차도 법 시행 전의 교육기관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설치 대

상건물에서 제외하여 기존 교육기관 건축물의 편의시설 확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통합하여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해 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로는 통합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장애인들의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하며 자기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교육기관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연구

편의증진법이 제정된 후 신축되는 많은 시설물들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논했듯이 이동권의 확보차원에서 본다면 완전한 편의시설이 확보되지 않고는 장애인은 이동의 단절은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이나 사회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의 접근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할 것이며, 행정당국은 각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행정당국은 건축설계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토록 하여 건축을 허가해야 할 것이며, 설치된 편의시설물들이 장애인을 위해 그리고 거동에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장구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좀더 편하며 설치비용이 적게 들고 설치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내 복지관련 및 재활공학을 연구하기 위한 학과의 설치나, 연구소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제주도형 복지모형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7. 장애인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사회인식개선

편의증진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행하고 감독하는 행정당국의 관계자나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편의증진법을 바탕으로 한 편의시설은 제대로 활동될 수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많은 공공기관과 시설물을 조사하였는데 몇몇 시설에서는 장애인용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운영비용상의 이유를 들어 장애인용 출입문을 폐쇄한 곳도 있었다.

이것은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집행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으며, 장애인들도 이동권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회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해야 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1. 요약

이상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장애인들의 사회의 일원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찰조사와 아울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장애인들이 느끼는 사회단절정도를 분석함은 물론 장애인들의 욕구에 기초한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관찰조사결과 아직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은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도로·보도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아직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전신구 등 돌출물이 많고 보도의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축물의 주요 장애인 편의시설인 주출입구 경사로, 장애인용 주차장,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설치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욕구분석을 해본 결과 몇 가지 기본요인 제고요인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장

에인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감안한 필요도를 정책의 우선 순위로 하며, 둘째, 장애인 밀집도와 장애인 선호도를 감안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도를 정책의 우선 순위로 하고, 셋째,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활용도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물외부시설과 매개시설, 그리고 건물내부시설의 설치율을 감안한 연계성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정책의 우선 순위로 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만족도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필요도와 이용만족도 그리고 연계성과 비례하며, 장애인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도와 이용도, 연계성을 동시에 고려한 편의시설 확충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편의시설 확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으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겠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찰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각 시·군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는 장애인들의 밀집도 및 정책결정자의 의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책결정자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의 반영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즉 장애인 편의시설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가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이념과 신념이 중요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 집행상의 문제라 하겠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관찰조사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형식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치되는 실태가 많이 관찰되었다. 즉 장애인용 화장실을 청소용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되거나, 장애인용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장애인용 자동 출입문을 설치하였으나 이를 폐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편의증진법 등을 제정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있으나

정작 집행과정에서는 편의시설이 장애인에게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형식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이동성을 감안한 편의시설 설치와 아울러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와 아울러 이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편의증진법에 의하여 매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설치된 편의시설이 장애인에게 긴요성이 있으며, 장애인들의 이용에 만족하고 있고 연계적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함의와 과제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생존권과 생명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평등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능력 그 자체에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에게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욕구에 따른 평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이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동시대의 동 연령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갈 수 있는 곳에 장애인도 할 수 있고 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사회통합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복지정책도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적 흐름도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장애인법(ADA)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즉 완전한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특히 유자격 장애인⁴²⁾에게 직업활동을 위한 적절한 배려⁴³⁾를 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42) ADA법의 긍정적 행동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이 아니고 유자격 장애인(qualified)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특정한 직무를 상당한 배려 하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직장환경을 정비하고 적당한 작업용 보조장구들을 개발하면 특정한 직무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43)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배려” (송역욱 역, “ADA의 충격”, 1993.10.1 한국장애인연맹 출판부)로 해석하기도 한다. Reasonable Accommodation 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첫째, 종업원이 사용하는 기존 설비를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직무의 재편성, 시간제근무 등 근무일정의 조정, 빈 자리로의 재배치,

또한 접근권의 보장에 대하여 편의증진법에서는 물리적 환경개선이라는 협의의 개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접근권을 사회적 접근, 경제적 접근, 물리적 접근 등 광의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즉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장애인의 직업 확보 등의 경제적 상황으로의 접근, 그리고 사회시설물에 대한 접근 등으로 바라보면서,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접근권을 광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장애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장애로서 오는 개인적 장애뿐만이 아니라 사회환경에서 오는 사회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항을 토대로 몇 가지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첫째,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준공검사시 장애인을 입회시키는 “장애인 사용검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근거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원리를 적용한 제도로서 장애인용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유도블럭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직접 사용한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자체 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설주에 대한 편의시설설치 및 장애인의 주택개조를 위한 보조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자체 기금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대하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들은 장애인용 전용버스의 운영을 원하고 있으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버스를 점진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아울러 시각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음성(자막)안내방송 장치를 모든 버스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일반 시설주에 대하여 세제감면 등의 혜택 및 보조 등을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민간 시설주에 대하여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세제감면을 주며, 설치하지 않는 시설주에 대하

장비나 장치 구입 또는개량, 시험·훈련기자나 정책의 조정 또는 개선, 자격있는 낭독인이나 통역인의 제공, 기타 유사한 형태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

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단시일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있어야 하겠다.

결국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미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될 때 장애인의 완전한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조성모외, 「장애인 복지활동과 시설계획」, (서울 : 학문사, 1997.1.25).
- 서광윤, 「효율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방안」, 한국아태장애인10년 연구모임, 1997. 3
- 권도용외, 「현대장애인복지개론」, (서울 : 홍익재, 1998.7.10)
- 권도용, “장애인 재활복지의 이념과 목적”, 「아·태 장애인 10년(1993~2002)에 대처할 국가적 장기전략 및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자료집」, 한국 아·태 장애인 10년 연구모임, 1995.3
- ———, “일본의 장애인 복지행정”, 「장애인 고용」, 1995, 봄호.
- 손준규,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 대학출판사, 1992.)
-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학문사, 1998. 7.20)
- 김용득·유동철,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 인간과 복지, 1999. 9.10)
- 남상만외, 「장애인 복지개론」, (서울 : 홍익재, 1997. 8.30)
-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박영사, 1998. 2.10)
- 이흥재, “장애인 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장애인복지법제」, (서울 : 법제처, 1989.12.26)
- 박옥희외,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초조사”, 1995
- 강경선, “접근권이란 무엇인가?”, 「함께걸음」, 1994
- ———, “법률적 의미로 본 장애인 접근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7주년 기념 심포지움,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자료집, 1994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설계자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000. 6.13
- 전용호, 「좋은 사회를 위한 장애인 복지론」, (서울 : 학문사, 2000. 3.10)
- 나운환외 7인, 「비교장애인복지정책」, (서울: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6.12)

- 조철호,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 설정 및 장애별 항목분류”, 한국 아·태장애인 10년 연구모임, 장애인 환경접근에 관한 정책대안 보고서, 「효율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방안」, 1997
- ———, 장애인을 고려한 도시가로 공간의 Barrier-Free”, 「재활」, 1994.5.
- 박순일외, 「장애인·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방안」,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한국재활재단, “한국장애인 복지변천사”, (서울 : 양서원, 1997. 1. 10)
- 송영욱, “소비자의 입장에서 장애인복지를 생각한다”, 서울DPI,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의 사회참여」, 1999. 4. 9
- 홍영기, 「장애자 소비생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소비자보호원, 1988)
- 정기원외,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12)
- 오혜경, “장애인 복지학 입문”, (서울: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7. 8.20)
- 서선호, “우리나라 장애인편의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성정현, “지체장애인과 환경간의 적응적 적합성(adaptive fit)에 관한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서문원, “재가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2. 국외문헌

- J.Edward Kellough and Robert C.Gamble,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Implications for Public Personnel Management*, Prentice-Hall, Inc. 1995. p250~251
- Frierson, J.G. Employer’s guide to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Washington,D.C.:The Bureau of National Affairs. 1992.
- 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 WH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 Handicaps”, (Geneva : WHO, 1980)

- LaPlante, M.P., "The demographics of disability", The Milbank Quarterly, vol.69, Suppl/2, Pt. 1, 1991.
- W.Goodman, 정립희관(역), "장애인 이동훈련", 1995.
- 에이타 야시로 외, 송영욱(역), 「ADA충격」, 한국장애인연맹출판부, 1993



Abstract

A Study of Facility Adaptations for Handicapped People on Jeju Island

Oh, Sung-Ji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o, Chang-Hoon*

In general 'handicap' is a present state and means a restriction on activity rather than a character, so that the state of handicap is affected a lot by both the state of consciousness on handicap and environment. But the handicapped actually live a restricted living because of a prejudice of them and a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 Both of the factors make them difficult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and cause them to feel isolated from the society they belong to.

With the recognition of the matter on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e up with these following solutions in order to acquire a complete access to the society. First, the study will find out how much the handicapped in Jeju feel isolated due to phys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hich block their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Second, it will attempt to a plan of improvement based on their desire by finding problems which occurs in the enforcement of policies provided by the law on the improvement of the handicapped, senior citizens and pregnant women's lives. Third, it will bring up a plan for social unification through the acquirement of handicapped people's right to access and their complete participation in the society. For theses purposes the

study attempted to break down the actual situation and the present conditions of facilities for handicapped people installed in Jeju. And in order to improve the facilities it investigated the degree of their social activities and problems. And finally it tried to make plans of the improvement of them.

First of all, in order to extend the facilities for handicapped people efficiently, the first priority is how much necessity they demand in consideration of the type and the degree of handicap, the next is how much they will be used in terms of the density of handicapped people and the preference of them, and the next is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in connection with outdoor, mediatorial and indoor equipments.

On the basis of the three factors, the plan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use in the facilities should be made.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olicy of extension in consideration of handicapped people's desire, followed by a strong will of the policy-maker in charge of decision of plans and their enforcement, by a strict management and superintendence in process of their enforcement, and last by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n the result and the plan for improvement of the problems to be put in a subsequent better policy.

In terms of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methods of them revealed by the study, some suggestions to extend the efficient and rational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heck system of use by the handicapped" that attend the completion inspection after the public facilities are completed. This system is grounded on the principle that the facilities for handicapped people is based on the demand and desire of them and it will contribute to a high satisfaction of their use.

Second, in order to extend the facilities for handicapped people,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financial resources to establish the facilities and to subsidize the refurbishment of their houses. The fund is desirable to be raised through the handicapped people's organization.

Third, the public transit system available to the handicapped should gradually be improved so they can be free to move.

And finally,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extension of the facilities for handicapped people by providing those who include the facilities for handicapped people in their buildings with the reduction and exemption of taxes, benefits and subsidies.

As mentioned above, the study suggested some alternatives to the policy to promote the better facilities for handicapped people on the basis of the investigation of problems. But the extension of the facilities for handicapped people cannot be done in a short period. Most importantly, over a long period the persistent interest and investment in the facilities for handicapped people can really improve their lives and a living quality of the society.



부록 1 관찰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관찰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서식 1)

① 구간 :

②구분	③내용	④설치정도	⑤관찰자 의견 (설치수/총개수)	
도로, 보도	o 노면상태	o 휠체어장애인이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가?		
		o 보도블럭 포장시 이음새부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공되었는가?		
		o 보도블럭 면이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o 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덮개를 설치했으며, 표면과 균일하게 시공되었는가?		
	o 차도와 보도의 구분은 명확한가?			
	※ 차도와 보도를 구별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정도를 %로 표시할 것			
	o 전신구, 간판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돌출물은 없는가?			
	※ 보행에 방해가 되는 전신구, 간판 등 돌출물이 설치된 정도를 %로 표시			
	o 점자블럭은 설치되어 있는가?			
	※ 조사구간 전체길이를 100으로 하여 점자유도블럭의 설치정도를 %로 표시			
	o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보도폭은 1.2m이상 유효폭을 가지고 있는가?			
	※ 조사구간 전체길이를 100으로 하여 유효폭의 확보정도를 %로 표시			
o 지하도 입구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는가?				
승강장	o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을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 경사로가 설치되었는가?			
	o 승강장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는가?			
공중전화	o 장애인용 전화기는 있는가?			

가. 유의사항

- ① 편의시설에 대한 관찰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장애인의 이동경로를 중시하여 이동의 단절이 가져올 수 있는가를 살펴볼 것
- ② 조사대상 시설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대체하는 시설물이나 요원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하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간주할 것
- ③ 비록 편의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관찰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서식 2)

기관 :

구분	내 용	설치정도	관찰자의견 (설치수/총개수)
화장실	o 화장실은 장애인등이 접근이 가능한가?		
	o 남녀표시(시각장애인식별)은 되어 있는가?		
	o 장애인용 전용화장실은 있는가?		
	o 화장실의 출입구 0.3m 전면에 점형블럭이 설치 되었는가?		
	o 장애인용 화장실의 규격은 적정한가? (폭 1.8m 높이 1m)		
공중전화	o 장애인 전용전화기 혹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는 있는가? (주화투입 및 버튼 조작높이 0.9 ~ 1.4m이하)		
자동판매기	o 자동판매기 조작장치 높이(1.2m)는 적절한가? o 자동판매기 조작장치에 점자표시는 ?		
출입구	o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에 턱낫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경사로가 설치되었는가?		
	o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는가?		
	o 문의 통과폭(0.8m)은 적절한가?		
	o 출입구 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승강기	o 승강기내의 안전손잡이는 설치되어 있는가?		
	o 조작장치의 높이는 적절한가?(1.2m)		
	o 문의 개폐시간은 충분한가(10초이상)		
	o 층수를 알리는 방송시설은?		
주차장	o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설치되어 있는가? (10대미만은 제외)		
	o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었는가?		
	o 전용주차장의 면적은 적절한가? (수평 폭2m 길이6m, 수직 3.3m, 길이 5m)		
계단	o 계단양옆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o 동일계단에서 쉼면의 높이와 디딤판의 길이는 균일한가?		
	o 쉼면의 높이가 0.18m이하인가?		
	o 계단디딤판의 치수는 적절한가(0.28m이상)		
경사로	o 경사로의 손잡이는 설치되어 있는가?		
	o 경사로의 폭은 적절한가?(0.9~1.2m이상)		
복도	o 복도는 유효폭이 적절한가(1.2m이상)		
	o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의 0.3m 전면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는가?		
피난시설	o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시각 장애인용 경보시설등이 설치되었는가?		
관람석	o 열람석수의 1%의 관람석을 장애인을 위하여 만들었는가?		
작업대	o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었는가?(0.7이상 0.9m이하)		

관찰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서식3)

① 구간 : ~ (구간 : 지점)

② 구분	③ 내용	④ 설치정도	⑤ 관찰자 의견 (설치수/개수)
횡단보도	o 횡단보도의 단차는 3cm이하이거나 연석경사도가 설치되어 있는가?		
	o 횡단하는 시간은 ?(시간을 기재)		
	o 횡단보도의 폭은 ?		
	o 시각장애인용 신호기 설치는 ?		
	o 시각장애인용 신호음은 동일한가?		

가. 작성요령

- 횡단보도 표시가 있는 건물목에 대하여서만 조사할 것.



① 구간 : ~ (구간 : 지점)

② 구분	③ 내용	④ 설치정도	⑤ 관찰자 의견 (설치수/개수)
횡단보도	o 횡단보도의 단차는 3cm이하이거나 연석경사도가 설치되어 있는가?		
	o 횡단하는 시간은 ?(시간을 기재)		
	o 횡단보도의 폭은 ?		
	o 시각장애인용 신호기 설치는 ?		
	o 시각장애인용 신호음은 동일한가?		

가. 작성요령

- 횡단보도 표시가 있는 건물목에 대하여서만 조사할 것.

구분	조사구 번호	조사표번호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오성진입니다.

본 설문지는 제주도 장애인복지정책중 편의시설정책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논문을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성의있는 응답은 제주도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제주도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처리를 통해서 순수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은 절대 보장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각 질문에 선생님의 의견과 일치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2. 기재해야 할 곳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2000. 7.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오성진
연락처 : (직) 754-3603 (집) 758-4934

[장애인 편의시설실태에 대한 연구]

선생님께서 사회생활을 영위하시는데 있어, 교통 및 편의시설의 이용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 이용시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내용에 대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 편의시설 : 도로, 보도, 횡단보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공중전화, 자판기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설물을 말합니다.

응답자 일반사항

* 다음은 통계적으로만 의미있는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동/리단위 까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시,군 읍,동 리)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어업·임업()
② 자영업----- ()
③ 판매/서비스직---- ()
④ 기능·숙련직---- ()
⑤ 일반작업직----- ()
⑥ 사무·기술직---- ()
⑦ 경영·관리직---- ()
⑧ 전문·자유직---- ()
⑨ 가정주부----- ()
⑩ 학 생----- ()
⑪ 무 직----- ()
⑫ 기 타 (적을 것:)

5.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① 다니지 않았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 ⑤ 전문대학 ⑥ 대학교이상 ⑦ 특수학교 초등부
- ⑧ 특수학교 중등부 ⑨ 특수학교 고등부 ⑩ 특수학교 전공과

6. 귀하의 장애종류 및 등급은? (장애 급)

7. 귀하의 한달 총수입은 대략 얼마입니까?

(만원)

8. 귀하의 생활수준은 다음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층 ② 중상층 ③ 중층 ④ 중하층 ⑤ 하층

9. 귀하의 주거형태는?

-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다가구주택 ⑤ 기숙사
- ⑥ 공동숙소 ⑦ 기타

10. 귀하의 주택소요 여부는?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영구임대 ⑤ 보증부 월세
- ⑥ 무료임대 ⑦ 기타()

11. 귀하는 소득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외출에 관련된 사항”으로 가십시오.
- ② 아니오

12. 현재는 직업이 없지만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우, 취업되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편의시설 부족 ② 기능·기술 부족 ③ 정보부족 ④ 장애로 인해
- ⑤ 장애인 고용기피 ⑥ 기타()

외출에 관련된 사항

1. 귀하께서는 직장이나 학교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자주 외출하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 2-3회 ③ 일주일 1회 ④ 1달 1-2회 ⑤ 1년에 2-3회
⑥ 전혀 안감

2. 외출의 목적은 주로 무엇입니까(직장, 학교제외)?

- ① 사교/단체활동 ② 문화/여가/체육활동 ③ 봉사활동 ④ 일상활동
⑤ 직업/교육관련활동 ⑥ 의료/보건활동 ⑦ 종교활동 ⑧ 기타()

3. 외출시 주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직장, 학교 제외)?

- ① 도보 ② 버스 ③ 택시 ④ 지하철 ⑤ 승용차(자가용 포함)
⑥ 오토바이 ⑦ 자전거 ⑧ 휠체어 ⑨ 기타()

☉ 직장인 및 직장경험이 있는 분-----> 4번으로.

☉ 학교에 재학중인 분 -----> 7번으로

4. 직장의 주요 통근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자택에서 자영업 ② 혼자 걸어서 ③ 타인의 도움으로 걸어서 ④ 버스
⑤ 택시 ⑥ 자가용 ⑦ 오토바이 ⑧ 전동휠체어 ⑨ 기타()

5. 직장까지 출퇴근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6번 질문으로
② 없다 -----> 10번 질문으로

6.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행상의 불편(노면, 신호길이 등) 해소 ② 직장근처로 이사를 위한 지원
③ 승용차 구입지원 ④ 택시이용을 위한 지원
⑤ 장애인 승차가능버스의 운용 ⑥ 보조요원(도우미)의 지원
⑦ 시각장애인 안내견 지원 ⑧ 기타()

☉ 10번 질문부터 대답해 주십시오.-----> 10번부터 부탁드립니다.

§ 학교에 재학중인 분에 한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7. 학교의 주요 통학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혼자 걸어서 ② 타인의 도움으로 걸어서 ③ 통학버스 ④ 택시
- ⑤ 자가용(부모 등의 도움) ⑥ 기타()

8. 학교까지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9번 질문으로
- ② 없다 -----> 10번 질문으로

9.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행상의 불편(노면, 신호길이 등) 해소 ② 장애인 승차가능버스의 운용
- ③ 보조요원(도우미)의 지원 ④ 시각장애인 안내견 지원
- ⑤ 기타()

**10. 대중교통 이용시 편의증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
입니까? 우선순위대로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BRAN), (), ()**

- ① 장애인 전용버스의 운영/ 활성화
- ② 장애인 전용택시의 운영
- ③ 교통비(택시.버스) 일부지원
- ④ 장애인 차량구입 용자확대
- ⑤ 오토바이 구입/이용지원
- ⑥ 자막 안내방송 설치지원
- ⑦ 정차호출램프 설치지원
- ⑧ 편의증진요원(도우미) 배치
- ⑨ 기타()

도로 · 보도

*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도로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답하여 주십시오.

도로(보도, 지하도, 횡단보도)

편의시설항목	설치유무	편의시설 개선 필요정도	우선순위
	○ 대체로 설치 △ 부분적 설치 · 설치안된 경우 공란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항에 모두 V 표시하여 주십시오(불필요한 경우는 x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3가지 기입
1. 턱낮추기			1순위() 2순위() 3순위()
2. 보도 노면상태			
3. 경사로			
4. 보도의 유효폭			
5. 점자블럭			
6. 음향신호기			
7. 신호길이			
8. 육교/지하도계단			
9. 기타			

시설 · 건축물

1. 귀하께서 자주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시설물)을 다음에서 해당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1,2,3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슈퍼마켓	(2) 은행	(3) 약국	(4) 시장	(5) 이.미용실	(6) 공중목욕탕	(7) 식당.커피숍	(8) 종교시설	(9) 사회복지시설	(10) 병의원	(11) 시군청	(12) 동사무소	(13) 공원.유원지	(14) 호텔.여관	(15) 대형매점	(16) 전시장	(17) 운동시설	(18) 극장	(19) 학교	(20) 기타 ^ v

2. 귀하께서 이용하시는 건축물 편의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답하여 주십시오.

편의시설항목	설치유무	편의시설 개선 필요정도	우선순위
	○ 대체로 설치 △ 부분적 설치 · 설치안된 경우 공란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항 에 모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불필요한 경우는 X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 로 번호를 3가지 기입
1. 주출입구 접근로			1순위() 2순위() 3순위()
2. 장애인용 주차구역			
3. 주출입구 단차제거			
4. 출입구(문)			
5. 복도(유효폭,손잡이)			
6. 계단(유효폭,손잡이)			
7. 경사로			
8. 승강기/리프트			
9. 장애인용 화장실			
10. 장애인용 공중전화			
11. 접수대/작업대			
12. 점자블럭			
13. 점자표시판			
14. 비상등(경보등)			
15. 편의증진요원배치			
16. 기타()			

시설확충방안

1. 우리나라 각종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 ②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전시효과에 불과하다.
- ③ 일부 시설은 도움이 된다.
- ④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다.
- ⑤ 기타()

2.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 ②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전시효과에 불과하다.
- ③ 일부 시설은 도움이 된다.
- ④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다.
- ⑤ 기타()

3. 다음 시설 중 편의시설이 가장 잘 설치된 있는 시설은 어느 것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1,2,3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슈퍼마켓	(2) 은행	(3) 약국	(4) 시장	(5) 이.미용실	(6) 공중목욕탕	(7) 식당.커피숍	(8) 종교시설	(9) 사회복지시설	(10) 병의원	(11) 시군청	(12) 동사무소	(13) 공원.유원지	(14) 호텔.여관	(15) 대형매점	(16) 전시시설	(17) 운동시설	(18) 극장	(19) 학교	(20) 기타 ^ V

4. 다음의 시설 중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장 필요한 시설은 어느 것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1,2,3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슈퍼마켓	(2) 은행	(3) 약국	(4) 시장	(5) 이.미용실	(6) 공중목욕탕	(7) 식당.커피숍	(8) 종교시설	(9) 사회복지시설	(10) 병의원	(11) 시군청	(12) 동사무소	(13) 공원.유원지	(14) 호텔.여관	(15) 대형매점	(16) 전시시설	(17) 운동시설	(18) 극장	(19) 학교	(20) 기타 ^ V

5.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① 편의시설 설치 건물주의 시설 설치. 개조의 자금 지원·용자
- ② 장애인 거주주택의 시설설치. 개조의 자금지원·용자
- ③ 장애인도우미 등 편의증진요원 배치
- ④ 일반인·건물주에 대한 홍보와 교육
- ⑤ 장애인 전용시설(슈퍼, 병원, 약국 등)제도의 도입
- ⑥ 기타(구체적으로)

6. 정부에서는 ‘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주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편의시설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 이 기금의 용도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 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주에 대한 자금 융자
- ② 장애인에 대한 주택개조비 융자
- ③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
- ④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 ⑤ 기타(구체적으로)

☺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부록 3 기관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기관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기간 1999. 8. 13~9.16)

기관별 : 관공서

(단위 : %)

구분	내 용	제주시 (N=4)	서귀포시 (N=5)	북군 (N=4)	남군 (N=4)	계 (N=17)
화장실	o 화장실은 장애인등이 접근이 가능한가?	75	60	100	50	70
	o 남녀표시(시각장애인식별)은 되어 있는가?	0	0	0	0	0
	o 장애인용 전용화장실은 있는가?	25	40	75	25	41
	o 화장실의 출입구 0.3m 전면에 점형블럭이 설치 되었는가?	0	0	0	0	0
	o 장애인용 화장실의 규격은 적정한가? (폭 1.8m 넓이 1m)	100	100	100	0	75
공중전화	o 장애인 전용전화기 혹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는 있는가? (주화투입 및 버튼 조작높이 0.9 ~ 1.4m이하)	50	100	100	75	81
자동판매기	o 자동판매기 조작장치 높이(1.2m)는 적절한가?	100	80	100	100	93
	o 자동판매기 조작장치에 점자표시는 ?	0	0	0	0	0
출입구	o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에 턱낫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경사로가 설치되었는가?	100	80	100	100	94
	o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는가?	0	0	25	0	5
	o 문의 통과폭(0.8m)은 적절한가?	100	80	100	100	94
	o 출입구 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0	0	0	0	0
주차장	o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설치되어 있는가? (10대미만은 제외)	75	100	100	100	94
	o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었는가?	75	80	100	100	88
	o 전용주차장의 면적은 적절한가? (수평 폭2m 길이6m, 수직 3.3m, 길이 5m)	75	75	25	25	50
계단	o 계단양옆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0	20	75	0	23
	o 동일계단에서 쉼면의 높이와 디딤판의 길이는 균일한가?	100	100	100	100	100
	o 쉼면의 높이가 0.18m이하인가?	100	80	100	100	94
	o 계단디딤판의 치수는 적절한가(0.28m이상)	100	100	100	100	100
경사로	o 경사로의 손잡이는 설치되어 있는가?	0	20	100	50	41
	o 경사로의 폭은 적절한가?(0.9~1.2m이상)	100	60	100	100	88
복도	o 복도는 유효폭이 적절한가(1.2m이상)	100	100	100	100	100
	o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의 0.3m 전면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는가?	0	0	0	0	0
작업대	o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었는가?(0.7이상 0.9m 이하)	100	80	100	75	88
평 균		57.29	56.45	70.83	54.16	59.12

기관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기간 1999. 8. 13~9.16)

기관별 : 교육기관

(단위 : %)

구분	내 용	제주시 (N=2)	서귀포시 (N=3)	북군 (N=4)	남군 (N=4)	계 (N=13)
화장실	○ 화장실은 장애인등이 접근이 가능한가?	50	0	0	100	38
	○ 남녀표시(시각장애인식별)은 되어 있는가?	0	0	0	0	0
	○ 장애인용 전용화장실은 있는가?	0	0	25	50	23
	○ 화장실의 출입구 0.3m 전면에 점형블럭이 설치 되었는가?	0	0	0	0	0
	○ 장애인용 화장실의 규격은 적절한가? (폭 1.8m 넓이 1m)			100	100	100
공중전화	○ 장애인 전용전화기 혹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는 있는가? (주화투입 및 버튼 조작높이 0.9 ~ 1.4m이하)	100	66	0	0	40
자동판매기	○ 자동판매기 조작장치 높이(1.2m)는 적절한가?	100	66	-	-	80
	○ 자동판매기 조작장치에 점자표시는 ?	0	0	-	-	0
출입구	○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에 턱받이 받침을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경사로가 설치되었는가?	50	0	25	0	15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는가?	0	0	0	0	0
	○ 문의 통과폭(0.8m)은 적절한가?	100	100	100	100	100
	○ 출입구 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0	0	0	0	0
주차장	○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설치되어 있는가? (10대미만은 제외)	50	33	0	0	15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었는가?	50	33	0	0	15
	○ 전용주차장의 면적은 적절한가? (수평 폭2m 길이6m, 수직 3.3m, 길이 5m)	100	0			50
계단	○ 계단양옆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0	0	25	0	7
	○ 동일계단에서 쉼면의 높이와 디딤판의 길이는 균일한가?	100	100	100	100	100
	○ 쉼면의 높이가 0.18m이하인가?	100	100	100	100	100
	○ 계단디딤판의 치수는 적절한가(0.28m이상)	100	100	100	100	100
경사로	○ 경사로의 손잡이는 설치되어 있는가?	50	0	0		11
	○ 경사로의 폭은 적절한가?(0.9~1.2m이상)	50	0	0		11
복도	○ 복도는 유효폭이 적절한가(1.2m이상)	100	100	100	100	100
	○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의 0.3m 전면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는가?	0	0	0	0	0
평 균		50.00	31.72	30.68	37.50	39.34

기관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기간 1999. 8. 13~9.16)

기관별 : 금융기관

(단위 : %)

구분	내 용	제주시 (N=4)	서귀포시 (N=4)	북군 (N=4)	남군 (N=4)	계 (N=16)
화장실	o 화장실은 장애인등이 접근이 가능한가?	25	25	25	0	18
	o 남녀표시(시각장애인식별)은 되어 있는가?	0	0	0	0	0
	o 장애인용 전용화장실은 있는가?	0	0	25	0	6
	o 화장실의 출입구 0.3m 전면에 점형블럭이 설치 되었는가?	0	0	0	0	0
	o 장애인용 화장실의 규격은 적절한가? (폭 1.8m 넓이 1m)			100		100
공중전화	o 장애인 전용전화기 혹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는 있는가? (주화투입 및 버튼 조작높이 0.9 ~ 1.4m이하)	75	75	66	50	66
자동판매기	o 자동판매기 조작장치 높이(1.2m)는 적절한가?	100	100	100	100	100
	o 자동판매기 조작장치에 점자표시는 ?	0	0	0	0	0
출입구	o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에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경사로가 설치되었는가?	25	50	25	50	37
	o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는가?	0	0	0	0	0
	o 문의 통과폭(0.8m)은 적절한가?	100	100	100	100	100
	o 출입구 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0	0	0	0	0
주차장	o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설치되어 있는가? (10대미만은 제외)	25	0	25	0	12
	o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었는가?	25	0	25	0	12
	o 전용주차장의 면적은 적절한가? (수평 폭2m 길이6m, 수직 3.3m, 길이 5m)	100		0		50
복도	o 복도는 유효폭이 적절한가(1.2m이상)	100	75	100	75	87
	o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의 0.3m 전면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는가?	0	0	0	0	0
작업대	o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었는가?(0.7이상 0.9m 이하)	50	25	75	-	50
평 균		36.76	28.12	37.00	23.43	35.44

기관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기간 1999. 8. 13~9.16)

기관별 : 문화및교통시설

(단위 : %)

구분	내 용	제주시 (N=5)	서귀포시 (N=2)	북군 (N=1)	남군 (N=1)	계 (N=9)
화장실	o 화장실은 장애인등이 접근이 가능한가?	60	50	0	100	55
	o 남녀표시(시각장애인식별)은 되어 있는가?	0	0	0	0	0
	o 장애인용 전용화장실은 있는가?	20	50	0	100	33
	o 화장실의 출입구 0.3m 전면에 점형블럭이 설치 되었는가?	0	0	0	0	0
	o 장애인용 화장실의 규격은 적절한가? (폭 1.8m 넓이 1m)	100	100		100	100
공중전화	o 장애인 전용전화기 혹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는 있는가? (주화투입 및 버튼 조작높이 0.9 ~ 1.4m이하)	60	100	100	100	75
자동판매기	o 자동판매기 조작장치 높이(1.2m)는 적절한가?	100	100	100	-	100
	o 자동판매기 조작장치에 점자표시는 ?	0	0	0	-	0
출입구	o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에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경사로가 설치되었는가?	60	100	100	100	77
	o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는가?	0	0	0	0	0
	o 문의 통과폭(0,8m)은 적절한가?	100	100	100	100	100
	o 출입구 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0	0	0	0	0
주차장	o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설치되어 있는가? (10대미만은 제외)	40	50	0	100	44
	o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었는가?	40	50	0	0	33
	o 전용주차장의 면적은 적절한가? (수평 폭2m 길이6m, 수직 3.3m, 길이 5m)	50	100		0	50
계단	o 계단양옆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0	50	0	100	22
	o 동일계단에서 쉼면의 높이와 디딤판의 길이는 균일한가?	100	100	0	100	88
	o 쉼면의 높이가 0.18m이하인가?	100	100	100	100	100
	o 계단디딤판의 치수는 적절한가(0.28m이상)	100	100	100	100	100
복도	o 복도는 유효폭이 적절한가(1.2m이상)	100	100	100	100	100
	o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의 0.3m 전면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는가?	0	0	0	0	0
평 균		49.04	59.52	36.84	57.14	51.28

기관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기간 1999. 8. 13~9.16)

기관별 : 의료시설

(단위 : %)

구분	내 용	제주시 (N=4)	서귀포시 (N=1)	북군 (N=3)	남군 (N=0)	계 (N=8)
화장실	o 화장실은 장애인들이 접근이 가능한가?	50	0	33	-	37
	o 남녀표시(시각장애인식별)은 되어 있는가?	0	0	0	-	0
	o 장애인용 전용화장실은 있는가?	25	0	33	-	25
	o 화장실의 출입구 0.3m 전면에 점형블럭이 설치되었는가?	0	0	0	-	0
	o 장애인용 화장실의 규격은 적정한가? (폭 1.8m 넓이 1m)	100		100	-	100
공중전화	o 장애인 전용전화기 혹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는 있는가? (주화투입 및 버튼 조작높이 0.9 ~ 1.4m이하)	50	100	100	-	66
자동판매기	o 자동판매기 조작장치 높이(1.2m)는 적절한가?	100	100	100	-	100
	o 자동판매기 조작장치에 점자표시는 ?	0	0	0	-	0
출입구	o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에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경사로가 설치되었는가?	50	100	33	-	50
	o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는가?	0	0	0	-	0
	o 문의 통과폭(0.8m)은 적절한가?	100	100	100	-	100
	o 출입구 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0	0	0	-	0
승강기	o 승강기내의 안전손잡이는 설치되어 있는가?	100	100	-	-	100
	o 조작장치의 높이는 적정한가?(1.2m)	100	100	-	-	100
	o 문의 개폐시간은 충분한가(10초이상)	100	0	-	-	75
	o 층수를 알리는 방송시설은?	33	0	-	-	25
주차장	o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설치되어 있는가? (10대미만은 제외)	75	100	0		50
	o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었는가?	75	100	0		50
	o 전용주차장의 면적은 적절한가? (수평 폭2m 길이6m, 수직 3.3m, 길이 5m)	66	0			
계단	o 계단양옆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0	100	0		12
	o 동일계단에서 쉼면의 높이와 디딤판의 길이는 균일한가?	100	100	100		100
	o 쉼면의 높이가 0.18m이하인가?	100	100	100		100
	o 계단디딤판의 치수는 적절한가(0.28m이상)	100	100	100		100
복도	o 복도는 유효폭이 적절한가(1.2m이상)	100	100	66		87
	o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의 0.3m 전면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는가?	0	0	0		0
작업대	o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었는가?(0.7이상 0.9m 이하)	25	0	66		37
평 균		55.73	52.00	37.24	0.00	52.56

기관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기간 1999. 8. 13~9.16)

기관별 : 종교시설

(단위 : %)

구분	내 용	제주시 (N=5)	서귀포시 (N=2)	북군 (N=4)	남군 (N=4)	계 (N=15)
화장실	○ 화장실은 장애인등이 접근이 가능한가?	20	50	50	25	33
	○ 남녀표시(시각장애인식별)은 되어 있는가?	0	0	0	0	0
	○ 장애인용 전용화장실은 있는가?	20	0	0	0	6
	○ 화장실의 출입구 0.3m 전면에 점형블럭이 설치 되었는가?	0	0	0	0	0
	○ 장애인용 화장실의 규격은 적절한가? (폭 1.8m 높이 1m)	0				0
공중전화	○ 장애인 전용전화기 혹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는 있는가? (주화투입 및 버튼 조작높이 0.9 ~ 1.4m이하)	50	100	33	0	37
자동판매기	○ 자동판매기 조작장치 높이(1.2m)는 적절한가?	33	0	100		50
	○ 자동판매기 조작장치에 점자표시는 ?	0	0	0		0
출입구	○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에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경사로가 설치되었는가?	40	0	75	25	40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는가?	0	0	0	0	0
	○ 문의 통과폭(0,8m)은 적절한가?	80	100	100	75	86
	○ 출입구 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0	0	0	0	0
주차장	○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설치되어 있는가? (10대미만은 제외)	20	0	0	0	6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었는가?	20	0	0	0	6
	○ 전용주차장의 면적은 적절한가? (수평 폭2m 길이6m, 수직 3.3m, 길이 5m)	100				100
계단	○ 계단양옆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0	0	50	66	28
	○ 동일계단에서 쉼면의 높이와 디딤판의 길이는 균일한가?	100	100	75	100	93
	○ 쉼면의 높이가 0.18m이하인가?	100	50	100	100	93
	○ 계단디딤판의 치수는 적절한가(0.28m이상)	100	100	100	100	100
복도	○ 복도는 유효폭이 적절한가(1.2m이상)	100	100	100	100	100
	○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의 0.3m 전면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는가?	0	0	0	0	0
평 균		37.28	31.57	41.21	34.76	37.04

기관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기간 1999. 8. 13~9.16)

기관별 : 근린시설(약국,서점)

(단위 : %)

구분	내 용	제주시 (N=7)	서귀포시 (N=6)	북군 (N=6)	남군 (N=4)	계 (N=21)
출입구	o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에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경사로가 설치되었는가?	57	16	0	0	23
	o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는가?	0	0	0	0	0
	o 문의 통과폭(0,8m)은 적절한가?	100	100	100	100	100
	o 출입구 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0	0	0	0	0
평 균		39.25	29.00	25.00	25.00	30.75

기관별 : 대형매장

(단위 : %)

구분	내 용	제주시 (N=4)	서귀포시 (N=3)	북군 (N=3)	남군 (N=3)	계 (N=13)
화장실	o 화장실은 장애인등이 접근이 가능한가?	25	0	33	0	15
	o 남녀표시(시각장애인식별)은 되어 있는가?	0	0	0	0	0
	o 장애인용 전용화장실은 있는가?	0	0	0	0	0
	o 화장실의 출입구 0.3m 전면에 점형블럭이 설치되었는가?	0	0	0	0	0
	o 장애인용 화장실의 규격은 적정한가? (폭 1.8m 높이 1m)					
공중전화	o 장애인 전용전화기 혹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는 있는가? (주화투입 및 버튼 조작높이 0.9 ~ 1.4m이하)	50	33	100	33	45
자동판매기	o 자동판매기 조작장치 높이(1.2m)는 적절한가?	50	50			50
	o 자동판매기 조작장치에 점자표시는 ?	0	0			0
출입구	o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에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경사로가 설치되었는가?	50	33	66	33	46
	o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었는가?	0	0	0	0	0
	o 문의 통과폭(0,8m)은 적절한가?	100	100	100	100	100
	o 출입구 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0	0	0	0	0
승강기	o 승강기내의 안전손잡이는 설치되어 있는가?	100	100			100
	o 조작장치의 높이는 적정한가?(1.2m)	100	100			100
	o 문의 개폐시간은 충분한가(10초이상)	100	100			100
	o 층수를 알리는 방송시설은?	0	0			0
주차장	o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설치되어 있는가? (10대미만은 제외)	50	0	0	0	15
	o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었는가?	50	0	0	0	15
	o 전용주차장의 면적은 적절한가? (수평 폭2m 길이6m, 수직 3.3m, 길이 5m)	100				100
평 균		43.05	30.35	27.18	15.09	38.11

